

■ 발행일 2013. 3. 22(금)

■ 발행처

- 공동주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탈시설정책위원회
- 공동주최: 국회의원 김용익(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서기호(진보정의당), 국회의원 진선미(민주통합당)

주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95-25 한얼빌딩 3층
 문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02-795-0394 , <http://footact.org>

문제시설이 아닌 시설문제를 말하다 1.

“26년 전 그 날,
 형제복지원 사건을 기억한다”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 시: 2013. 3. 22(금) 오후 2시
- 장 소: 방송통신대학교 역사관
- 공동주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탈시설정책위원회
- 공동주최: 국회의원 김용익(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서기호(진보정의당), 국회의원 진선미(민주통합당)
- 후원: 4·9 통일평화재단
The April 9th Unification & Peace Foundation

문제시설이 아닌 시설문제를 말하다 1.

“26년 전 그 날,
형제복지원 사건을 기억한다”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 시 : 2013. 3. 22(금) 오후 2시
- 장 소 : 방송통신대학교 역사관
- 공동주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탈시설정책위원회
- 공동주최 : 국회의원 김용익(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서기호(진보정의당), 국회의원 진선미(민주통합당)
- 후 원 : **4·9 통일평화재단**
The April 9 Unification & Peace Foundation

진행순서

- 사회자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인사말
 - 강경선 (탈시설정책위원회, 방송대 법학과 교수)
 - 한종선 (살아남은아이 저자)
- 사전행사
 - 형제복지원에서 일했던 일, 애니메이션 상영 (한종선 제작)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 및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

- 형제복지원의 기억
 - 박태길소장 (부산참다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형제복지원 피해자 84~87년까지)
- '수사검사'가 본 형제복지원 사건
 - 김용원 변호사 (전 사건 검사)
- 과거의 형제복지원은 지금 현재 형제복지지원재단으로 존재(?)하다.
 - 박민성 사무처장 (부산사회복지연대)
- 지속되어야 할 표현, 발언, 글쓰기의 과제
 - 전규찬 교수 (한예종 영상원)
- 형제복지원과 진실에 대한 권리
 - 이재승 교수 (건국대 로스쿨)
- 형제복지원 사건과 국가책임
 - 김명연 교수 (상지대 법학과, 탈시설정책위원)

목 차

■ 인사말 :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진선미	7 - 8	p
■ 발표 1 : 형제복지원의 기억 박태길소장 (부산참다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형제복지원 피해자 84~87년까지)	11 - 16	p
■ 발표 2 : '수사검사'가 본 형제복지원 사건 김용원 변호사 (전 사건 검사)	19 - 38	p
■ 발표 3 : 과거의 형제복지원은 지금 현재 형제복지지원재단으로 존재하다. 박민성 사무처장 (부산사회복지연대)	41 - 44	p
■ 발표 4 : 지속되어야 할 표현, 발언, 글쓰기의 과제 전규찬 교수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영상원)	47 - 48	p
■ 발표 5 : 형제복지원과 진실에 대한 권리 이재승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50 - 84	p
■ 발표 6 : 형제복지원 사건과 국가책임 김명연교수 (상지대 법학과, 탈시설정책위원)	87 - 96	p
■ 부록 : <살아남은 아이>중 전규찬 교수의 글에 나타난 시설인권침해, 시설관련 정부대책 언론보도 등을 시간차 순에 의거 재정리한 글	97 - 114	p
형제복지원 대법원 판결문	115 - 123	p
형제복지원 사건 검찰 논고(요지)	125 - 126	p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지원재단 특별점검 결과보고 (2012.8.27.~9.7 10일간)	127 - 139	p

[인사말]

“형제복지원사건은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진선미

우선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을 비롯한 주관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발표자와 사회자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모이게 해주신 한종선 씨의 용기에 많은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합니다. 저도 국회를 드나들면서 수차례 한종선 씨를 만났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루에도 수없는 이야기들이 오가는 국회에서 생활하면서, 한종선 씨의 서툰고 작은 목소리에 진즉에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저보다 나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오늘 이런 자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대한민국의 맨살입니다. 과거 ‘부랑자’를 정화하라는 단순한 지침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히 부숩버린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돈과 권력을 위해 폭력, 성폭행, 강간, 강제노동, 살인 등 인권유린을 저지른 형제복지원 같은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직까지도 이런 유린된 삶에 대해 사과와 보상은커녕 진상규명 조차 나서지 않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복지원의 원장은 여전히 국가의 지원 속에 사회복지시설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열린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유정복 장관에게 형제복지원과 같은 70, 80년대 내무부 훈령에 따른 부랑인 시설의 강제수용과 인권유린에 대해 진상조사, 사과, 보상할 용의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유정복 장관은 “형제복지원 사건에서처럼 비정상적인 복지법인 운영과 당국의 관리 소홀로 인권유린 문제가 발생한 곳도 있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

만 형제복지원 사건은 한 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며 어떤 악인의 문제도 불운한 몇몇 피해자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사회정화'라는 독재정권의 목적 하에 이루어진 국가폭력의 문제이며, 결국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우리 사회의 근대화 속에 '사라졌던 사람들'을 다시 우리 앞에 불러옵니다. '사라졌던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어야 했습니까? 우리는 왜 몇 년간 죽음과 기갈, 폭력 속에서 인간의 본성을 시험당해야 했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화를 내야 합니까? 우리의 경험은 부끄러운 것이어야 합니까? 우리의 고통들은 과거의 일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현재의 문제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위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자리가 대답들을 찾아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발표 1]

형제복지원의 기억

“그곳에 인권이나 인간의 존엄성 따위는 결코 없었습니다”

박태길 소장

(부산참다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형제복지원 피해자 84~87년까지)

[발표 1]

형제복지원의 기억

“그곳에 인권이나 인간의 존엄성 따위는 결코 없었습니다”

박태길 소장(부산참다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형제복지원 피해자 84~87년까지)

1984년 저는... 부산 형제 복지원에 강제 수감 되었습니다.
1984년 여름으로 생각되는데, 집을 나와 생활하던 저는 부산 용두산 공원에서 잠을 자곤 하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잠을 자고 있는데 우리 앞으로 파란색 군용 차 같은 것이 세워졌고 갑자기 여러 사람이 뛰어나와 강제로 허리춤을 잡고 차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새벽녘이었고 밖을 전혀 볼 수 없었지만 아마 부산시 전역을 한 바퀴 다 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강제로 실려졌고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파출소로 잡혀들어 갔습니다.

그곳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기 시작했고, 신분증이 있는 몇 사람을 빼고는 다시 강제로 차에 실려야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14살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신분증이란 게 있을 수가 없었지요. 부모님이 누구냐, 집이 어디냐, 집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 같은 질문은 하지도 않았습니니다. 신분증이 없는 게 당연한 나이인데, 없다고 그저 붙들려 가야만 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술에 취한 사람이 “내려 달라!”고 소리소리 지르니까 갑자기 무지막지한 구타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말렸지요. 하지만 말리는 사람들도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다들 분위기 파악을 했는지 어디를 가는지 묻지도 않고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그 후부터 형제복지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모두 조용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수용자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완장을 찬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형제복지원 신입 소대라는 곳에 들어갔고, 그들은 우리에게 옷을 모두 벗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때의 수치심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활하는 소대로 전방을 가셔도 폭행과 기합은 매일 받지 않으면 마음이 허전할 정도로 일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매일 매일이 힘들었습니다. 때리는 이유도 가지가지였습니다. 갖다 붙이면 다 이유가 났습니다. 중대장, 소대장, 서무, 조장, 선도부 모두 자기 눈에 거슬리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형제복지원에서는 신입 수용자들에게 집으로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저도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지요. 그런데 되돌아왔습니다. 어린 나이니까 주소를 잘못 적은 것 같았습니다. '아, 이제 난 죽었다.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우연찮게 아버지 친구 분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분이 대신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해서 저는 일단 한 달 정도를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음을 잡지 못하고 가출을 하거나 하니까 아버지는 저에게 "거기가서 정신 차리고 오라"고 다시 형제복지원으로 보냈습니다. 그게 1984년 겨울에서 1986년 겨울까지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금방 날 찾아 올거라 생각했습니다. 헌데 기다려도 기다려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죽을 것 같았지만 도리가 없었습니다. 2년 만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복지원을 라운딩을 하는 일반사람들이 있었는데, 웬지 뒷모습이 그 분들 같더라구요. 그 때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태길아 니네 아버지 오셨다. 너 이제 나간다!" 저는 귀를 의심했고 정말 떨듯이 기렸습니다.

그곳에서는 오후 4시 30분 정도가 되면 각 소대마다 점호를 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밖에서 이중으로 문을 잠갔습니다. 1소대부터 28소대까지 있는데, 모두 대기하고 있다가 1소대부터 점호를 시작하면 28소대 점호가 끝날 때까지 차렷 자세로 있어야 했습니다. 점호가 끝나면 곧바로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갔구요.

그리고 아침 5시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들이 나가면 밤에 우리끼리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언제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

그리고 뭘가를 할 때는 꼭 군가를 부릅니다. 아마 저희가 군인보다 많은 군가를 알고 있을 겁니다. 재식훈련이라고 군대에서 각 잡는 건데, 저희도 했습니다. 뭐하나 틀리면 바로 몽둥이 찜질이니깐요. 아마 군대보다 더 잘했을 겁니다. 저희는 군기 잘 잡혔다고 상 받은 적도 있습니다.

종종 tv 시청도 합니다. 소대장이 맘 좋으면 12시까지 보여주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는 파란색 추리닝을 입고 살았는데, 경비들이나 조장 같은 사람들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두꺼운 군복 같은 것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모두 소대라고 불리었지만, A동, B동이라고 불리는 곳도 있었습니다. 병동인데 대부분 노인들이나 정신장애인들이 많았습니다. 치료를 제대로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적장애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외부에서 자발적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가족이 보낸 거죠. 그 사람들은 돈을 주고 형제복지원에서 살았던 겁니다.

형제복지원 안에는 개금국민학교의 분교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낮에는 수용자 중에 국민학생쯤 되는 아이들이 수업을 했습니다. 밖에서 출퇴근 하는 교사들이 형제복지원에 들어왔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그 교실에서 중학생쯤 되는 학생들이 외부의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에 의해 수업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1학년이었는데, 하루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친구들과 '탈출'을 하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수요일에 배 때 교회 옆에 있는 담으로 뛰어나가자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 버렸습니다. 탈출사건이 발각되자 중대장은 야구 방망이를 가져와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그 후 박인근 원장의 호출로 새마음 교회로 끌려갔습니다. 그 당시 임영수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셨고 사람들이 예배를 보는데 맨 뒤에 박인근이 서 있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야 했고, 박인근 원장은 "눈 감고 손 뒤로 해!"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 자세를 취하자마자 발길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아이라고 봐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보이는 대로 때리고 밟고 사정없이 후렷했습니다. 그 때 녹막염이 걸렸지만 치료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이면 내무반에서 검열을 합니다. 그날 날씨는 꼭 폭풍 전야와 같이 고요했습니다. 내무반 검열을 위해 우리 모든 소대원들은 중대장이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호각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형제원에서 호각 소리란 주위를 지키고 있는 경비들이 주위 경비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소대에서 영문도 모른 채 다른 경비들에 의해서 갇히게 되었습니다. 경비들이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근 것입니다.

1시간 정도가 흘러서 나와 보니 2소대, 9소대, 13소대 청년들이 속한 서무, 조장 이런 사람들이 미리 공모하여 새마음 교회 쪽으로 탈출을 한 것입니다. 그 와중에 얼떨결에 그 탈출에 동참한 13소대에 있던 '땅콩'이란 별명을 가진 녀석은 산바위 틈에 숨어 있다 잡혀왔는데 얼마나 맞았는지 몸이 영망진창이었습니다.

형제복지원은 탈출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외딴 곳이기도 하고 바로 옆에 군부대가 있어서 형제복지원 튜리닝 입은 사람이 밖으로 도망 나가게 되면 그 즉시 군부대에서 형제복지원으로 연락을 합니다. 군부대에서 신고를 하니 금세 잡힐 수밖에요. 그들 모두 한통속이었습니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형제원 변소는 밑이 뽕 뚫려있는 구조였고 그 밑에 까만 고무통을 끼워놓은 형식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도망가기 위해 그 더러운 변소에 숨어서 2박 3일을 보내다 발각된 사건이었습니다. 변소 밑 공간에서 도망갈 기회만 엿보다가 끝내는 도망도 가지 못하고 경비에게 걸려 죽도록 맞은 사건이었죠.

또 어떤 친구는 탈출에 성공해 밖으로 나갔는데, 아, 글썄 3-4일 만에 다시 잡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잡혔냐고 물어보니, 배가 너무 고파서 슈퍼에서 먹을 것을 훔쳐 먹다가 붙들려 파출소에 갔는데, 파출소에서 형제복지원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 파출소에 갔으면 유치장에 가야지 왜 형제복지원에 옵니까? 그것도 경찰이...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살고 있을까요?

당시에 "사람들이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청

소년이었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그런 일은 성인 소대에서 있었던 일이니까요. 소대의 문을 여는 열쇠는 조장과 서무가 갖고 있는데, 제가 아는 한 여자아이가 조장, 서무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근신 소대로 전방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내용을 조장이라는 사람이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몸을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매일 큰 돌을 망치로 깨고 돌을 나르는 일을 하다 보니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든 상황 이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었니까요. 그곳을 나오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기에 '허락'을 하지 않자 더 많은 구타와 기합을 받았고, 일도 더 힘들게 시켰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명령에 대한 복종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근신 기관이 끝나고 아동 소대로 전방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의 생활도 녹녹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전방을 가게 되었고 재봉실에서 일했습니다. 8개월 정도를 일을 했는데 제가 형제원을 나올 때 일을 한 대가라고 4만원이 안되는 3만8천원을 주더군요. 거기서도 수용 생활을 잘한 사람들이나 운전 교육대에서 운전 면허증을 딴사람들은 사회로 보내주곤 했습니다.

수용자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 교회에서 적금 전달식을 합니다. 적금 받고 나간 사람이나 그곳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다시 형제원 잡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옛날 군복을 입히고 80kg 자리 냅마 쌀자루를 뒤집어씌우고 거기에 글씨를 씁니다. "나는 도망갔다 잡혀 왔습니다" 같은 글이라고 기억합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내내 그걸 뒤집어쓰고 식당 앞에 하루 종일 세워놨습니다. 그것도 수용자들이 나쁜 마음을 먹지 못하게 하기위한 하나의 제스처입니다.

저는 거기서 심장병이 걸렸습니다. 그곳에는 일주일에 한번 사회에서 의사 선생님이 오십니다. 주위 수용자들도 저의 파란 입술이나 손톱을 보고도 안 심장병을, 그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감기약과 원기소 가루만 주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

보니 심장병 중에서 희귀성 심장병이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2년 정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나와서 부산대학병원의 실험용(?)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수술을 할 수 있었고 다행히 살아남았습니다. 촉탁 의사로 불리던 그 의사 선생님은 산부인과라고 하더군요.

거기에 있던 중대장이나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나 간수들 까지도 모두 저희처럼 잡혀왔던 수용자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생활하는 소대 안에 생활은 소대장, 서무, 조장이란 사람들의 힘은 무시무시할 정도로 막강 했습니다. 밤에도 기합을 주거나 구타를 하여도 원장이 어쩌다 한번 순찰을 돌다가 저희를 보아도 소대장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너무 잘한다”고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말입니다. 실은 저희가 맞는 모습을 원장이 봤으니 이제 저 놈들이 혼날 거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였던 거죠. 그들은 기합을 더 주었습니다. 그 소대장은 원장에게 잘 보이고 싶은 생각이겠지요.

소대장들은 서로 마음이 맞는 짝이 있으면 그곳에서 합동결혼식도 시켜주곤 했습니다. 제가 사회에 나오고 1년 후에 형제원에 있던 수용자 들을 만나기 시작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막강한 힘을 과시하던 사람들을 사회에서 만나니 거지 아닌 거지가 되어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도 살아보려고 신문을 파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산 시내 거리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중에 생각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하도 얼굴에 핏기가 없어서 물어보았더니 거의 매일 피를 뽑아서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하더군요. 왜 집에는 들어가지 않냐고 물으니 4년을 형제원에 있다가 나왔더니 집이 이사를 하고 없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처럼 형제원에서 나와서도 고아 아닌 고아가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시 다른 시설로 들어갔다고 하고 몇 년을 형제원에서 있다가 나오니 사회에 적응도 못하고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발표 2]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와 재판

김용원 변호사
(전 사건 검사)

[발표 2]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와 재판

김용원 변호사(전 사건 검사)

1. 수사 착수

- 1986. 12. 21. 울주군 작업현장 목격, 내사 시작
- 1987. 1. 16. 수사착수
- 1987. 1. 17. 형제복지원장 박인근 등 구속

2. 부산시장의 전화

- 1987. 1. 18. “박원장을 구속하면 안됩니다. 빨리 석방해야 합니다.”

3. 수사 확대 계획

- 수용자들의 수용경위, 처우, 가혹행위 및 성폭력
- 1975년부터 1986년 사이의 사망자 513명의 사인과 사체처리
- 국고보조금 횡령 등

4. 검찰지휘부의 수사방해

- 1987. 1. 21. “명에 의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수사를 중단하였음”
- 수용자들에 대한 조사 진행 불가능
- 1987. 3. 22.과 1987. 4. 22. 수용자 폭행치사 사건 발생

5. 박인근 원장의 횡령액수

- 11억 4,254만원 형량 확인
- 7억원 이내에서 공소장변경 허용, 결국 6억 8,178만원으로 변경

6. 박인근 원장의 감방생활

7. 수용자들의 석방

- 1987. 1. 15. 수용자 수: 3,174명
- 1987. 5. 23. 176명

8. 내무부훈령 제410호

-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1975. 12. 15. 제정

9. 전두환 대통령의 1981. 4. 10.자 지휘서신

- 총리 귀하
- 근간 신체장애자 구결행각이 늘어나고 있다는 바, 실태파악을 하여 관계 부처 협조하에 일절 단속 보호조치하고 대책과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전두환

10. 재판 진행

- 1987. 6. 23. 1심 판결, 징역 15년과 벌금 6억 8,178만원
- 1987. 11. 12: 1차 항소심 판결, 징역 4년
- 1988. 7. 7. 2차 항소심 판결, 징역 3년
- 1989. 3. 15. 3차 항소심 판결, 징역 2년 6월

형제복지원¹⁾

원장을 구속한 바로 다음날 아침,
부산시장이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원장을 구속하면 안됩니다.
빨리 석방해야 합니다“

1

1986년 12월 21일 일요일, 나는 울산에 와서 알게 된 어느 사냥꾼의 지프를 타고 꿩이나 한 마리 잡아보려고 산 속을 헤매고 다녔다. 그러나 저녁 시간이 될 때까지 꿩은 한 마리도 눈에 띄지 않았다.

실망하고 있던 나에게 그 사냥꾼이 지나가는 말투로 몇 마디 했다. 여기서 멀지 않은 산 속에 이상한 작업장이 있다. 인부들이 산을 깎는 작업을 하는데 경비원들이 몽둥이를 들고 지킨다. 경비원들이 인부들을 개 패듯이 패는 것을 몇 번 보았다. 커다란 개 여러 마리가 인부들을 지킨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대한민국에는 그런 작업장이 있을 수 없다. 작업하는 인부들이 군인이나 죄수라면, 지키는 사람들은 몽둥이가 아니라 총을 들고 있어야 한다. 나는 사냥꾼을 재촉하여 그 작업장으로 달려갔다.

작업장이 시야에 들어온 순간 사냥꾼의 말이 모두 사실임을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 차에서 내려서자마자 청년들 여러 명이 몽둥이를 들고 뛰어와 나를 빙 둘러쌌다.

나는 그들에게 이곳에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들은 목

1) 이 글은 김용원 변호사가 쓴 「브레이크 없는 벤츠(1993, 예하)」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에 관한 글을 발췌한 것임.

장을 만드는 중이라고 대답했다. 누구의 목장이냐고 물어보니까, 잔뜩 경계심을 보이며 무슨 복지원 원장의 것이라고 하고는 나보고 어디서 왔느냐고 되물었다. 나도 목장하는 사람이어서 목장에는 관심이 많다고 대답하고는 얼른 차를 타고 내빼듯이 그곳을 빠져나왔다. 사냥꾼은 얻어맞지 않고 빠져나온 것을 다행스러워했다.

나는 그 목장 주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잡아넣기로 마음먹었다. 한두 명도 아닌 여러 인부들에게 몽둥이질을 해가면서 노역을 시키는 것은 분명 중대한 범법행위였기 때문이다.

나는 경찰관들에게 인부들의 작업 장면과 몽둥이를 든 경비원들의 모습, 쇠창살이 쳐진 인부들의 숙소 등을 망원렌즈를 이용하여 사진촬영하게 했다. 울준청에 알아보니까 그 목장은 부산의 형제복지원 원장이 만들고 있는 것이라 했다. 그곳은 초지인데 아직 정식으로 초지훼손허가가 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부산시에 확인해 보니까 형제복지원은 사회복지시설인데 부랑인 3,000여 명 정도 수용되어 있다고 했다. 이제 상황은 비교적 명백해졌다. 형제복지원 원장이 수용중인 부랑인들을 끌고 와 강제노역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3,000명의 민간인을 정부의 허가 아래 노예로 부리고 있는 형제복지원 원장은 보나마나 엄청난 거물일 것이다.

얼마간 조사를 해보니 원장은 과연 대단한 거물이었다. 그는 1981년 4월 국민포장을, 1985년 5월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통상임위원에도 임명되어 있을 정도로 중앙정부에까지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형제복지원 등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1985년에는 18억원 가량을, 그리고 1986년에는 21억원 남짓 되는 돈을 국가 및 부산시로부터 지원받았다. 그를 상대로 어떤 사람이 감금당했다고 고소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도리어 무고죄로 구속된 사실까지 있었다.

나는 차를 타고 부산에 내려가 형제복지원을 찾아낸 후 주위를 빙빙 돌아보았다. 교도소를 뺄치는 어마어마한 철문과 성곽 같은 거대한 담장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다. 내가 아는 법전에는 이런 시설을 인정하는 법률이 없

다. 무엇인가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한 나는 파헤쳐 보리라 마음먹었다.

나는 거물을 잡기에는 금요일 오후가 적당하다는 이치를 익히 터득하고 있었다. 금요일 오후에 잡아와서 토요일 아침에 전격적으로 구속해 버리면 제아무리 거물이라도 ‘뺨’을 동원할 겨를이 없다.

1987년 1월 16일을 거사일로 잡았다. 한번 놓친 거물은 결코 다시 잡히지 않는다. 그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원장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가 ‘뺨’을 쓰기 전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울산지청은 부산지방검찰청 소속이었으므로 나는 부산지검 검사장에게 미리 보고하기로 결심했다. 1월 13일 오후, 나는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요약한 보고서를 들고 검사장을 찾아가 만났다. 형제복지원에 대해서 정식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원장을 연행해 조사하겠다고 했더니 검사장은 선뜻 동의했다. 차장검사는 마침 자리에 없어서 보고서 한 장을 차장검사실 근무자에게 주고 나왔다.

나는 내심 쾌재를 불렀다. 검사장은 이 사건이 몰고 올 태풍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검사장의 허락까지 받았다. 돌아오는 길에 다시 형제복지원으로 가서 외곽을 둘러보고 출입문을 확인해 보니 정문 하나밖에 없었다. 정문으로 쳐들어갔을 때 원장이 후문으로 도망가면 만사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음을 우려했던 나는 안도했다. 원장을 잡으러 가는 날 부산경찰의 지원을 요청할까 생각해 보았다. 3,000명의 부랑인들이 원장이 잡혀간 사이 난동이라도 피우면 어쩌나 해서였는데 형제복지원에 원장 말고도 통제인원이 있으리라 믿고 지원요청을 단념하였다.

1월 16일 오후, 나는 울산의 경찰병력을 100명가량 동원하여 울주의 작업장을 덮치게 했다. 나는 작업장의 간부, 경비원 및 인부들을 남김없이 데려다 놓으라고 지시하고 부산으로 원장을 잡으러 갔다.

무술경관들 10여 명과 함께 부산에 내려가 형제복지원에 들어가 보니 원장이 밖에 나가고 없었다. 내심 걱정이 되었지만 그곳 직원들에게 원장을 불러오라고 하고는 내부시설을 돌아보았다. 나의 예상은 거의 들어맞았다.

건물마다 출입문에는 안쪽으로 견고한 자물쇠 장치가 되어 있었다. 이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완벽한 감금시설이었다.

병동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다.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밖으로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안내하던 사람이 이곳은 중증 결핵환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곳이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하였으나 나는 자물쇠를 열게 한 후 들어가 보았다. 그곳에는 죽음의 그림자들이 짙게 드리워진 흉측한 몰골의 사람들이 수십 명 여기저기 모여 있었다.

원장실에는 대형금고가 놓여 있었다. 산소 용접기를 빌려와 금고를 열었더니 각종 예금증서들과 달러화, 엔화 등이 쏟아져 나왔다. 예금증서들의 액면금액을 대충 합쳐보니 20억 원이 넘었다. 진작부터 우리가 와 있다는 보고를 듣고도 들어오지 않고 있던 원장은 그제서야 헐레벌떡 달려와 왜 남의 금고를 부수었냐고 항의했다.

나는 형제복지원의 핵심간부들을 모두 차에 태우고 압수한 장부들도 실었다. 차에 오르기 전 원장은 나를 험상궂게 쏘아보다가 “이 복지원에서 사고가 나면 당신이 책임질거야?”라고 소리쳤다.

울산지청은 갑자기 복새통이 되었다. 복지원 간부들, 경비원 및 수용자들을 합해 족히 100명이 넘는 인원을 밤새워 조사하였다.

아침이 되자 몇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다. 복지원 수용자들은 대부분 멀쩡한 사람들인데 납치되다시피 끌려와 감금되어 있으면서 노임도 받지 못한 채 강제노역에 동원되었던 것이다. 원장은 수용자들을 동원하여 산 속의 초지를 멋대로 훼손하고 동물들을 위한 축사를 수용자들의 숙소로 용도변경하였다. 또 원장은 외화를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었다. 나는 원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을 집행한 후 부산지검과 대검찰청, 법무부 등에 보고까지 마쳤다. 이때가 1987년 1월 17일 토요일 12시 32분이었다.

좀더 조사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떠올랐다. 복지원 수용자들 3,000여명 중 대부분이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장기간 감금되어 있으면서 극히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점, 원장이 수용자들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 공금을 마구 횡령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점과, 많은 공무원들이 뇌물을 먹고 원장의 뒤를 박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 등이 그것이었다.

인간의 신체적 자유란 소중하기 으를 데 없는 것이다. 단 한명이라도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장기간 감금당한 채 강제노동에 시달린다면 그것은 중대한 사건이다. 아무리 못난 인간이라도 그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복지원이라는 이름의 감방이 아닌 감방에 감금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아무리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더라도 진상을 규명해 보리라 결심했다.

그러나 상서롭지 못한 조짐은 너무 빨리 나타났다. 원장을 구속한 바로 다음날 아침, 부산시장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 “박원장 구속하면 안됩니다. 빨리 석방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물론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지만, 부산시장은 주무장관인 보사부장관에게 원장이 바로 석방되도록 해달라고 건의하는가 하면, 그뒤부터 사사건건 사건 내용을 중앙정부에 왜곡 보고하여 나의 수사활동을 방해하였다. 그러나 원장은 부산시장의 견마지로(犬馬之勞)를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듯, 1987년 2월 19일에 이르러 감방 안에서 “부산시장이 너무하는구나. 두고 보자”라고 외치기도 했다.

울산지청의 인력만으로는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음이 곧 명백해졌다. 그래서 1월 20일 부산지검에 수사인력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 너희들이 저지른 사건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었다.

울산지청의 모자라는 인원으로나마 조사를 계속하자 자꾸 새로운 사실이 터져나왔다. 작업에 동원된 수용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구타해서 죽여 버린 사건이 드러났고, 원장은 국고보조금 중 주식비·부식비·피복비 등을 마구 횡령하여 사복을 채우고 있음이 드러났다.

형제복지원은 군대식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작은 왕국이었고, 원장은 왕이었다. 수용자들은 군번 비슷한 수용번호를 부여받아 내무반 생활을 하였으며 소속 소대장과 중대장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했다. 수용자들은 주로 시례기국이나 해장국을 먹으며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각자 봉제공장,

목공소, 철공소 등의 작업장에 배치되어 쉴 새 없이 일해야 했다.

수용자들은 대부분 무보수였으나 특별히 원장의 신임을 받는 자들은 몇몇은 매월 기백원 내지 기천원의 월급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도 월급 전액을 고스란히 강제 저축 당했다가 작업을 게을리하였다거나 간부들에게 불손한 언동을 하였다 하여 징계 받아 몰수당하기 일쑤였다.

도망치려 했거나 명령에 반항한 수용자들에게는 엄청난 형벌이 가해졌다. 매주 월요일 아침에 열리는 이른바 인민재판에서 공개적으로 구타를 당한 뒤, 아오지탄광이라 불리는 7소대 또는 13소대에 배치되어 혹독한 시련을 받아야 했고, 독방에 감금되어 하루 종일 꿏어앉아 있다가 잠도 꿏어앉아서 자야 하기도 했다.

수용자들은 특하면 얻어맞아 죽어갔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의사들은 얻어맞아 죽은 수용자들이 자연사(自然死)했다고 진단서를 꿏어주었다. 그들의 시체는 의과대학에 실습용으로 팔려갔다고들 했다.

수용자들 가운데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 보니 눈이 맞아 결혼을 하게 된 운 좋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지휘 계통을 통해 결혼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연후에야 결혼할 수 있었으며, 부부 어느 한 쪽이라도 '윗분'의 눈 밖에 나게 되면 기약 없는 별거명령을 받기 일쑤였다.

이 사건은 연일 신문에 대서특필되었고, 마침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서울 대생 박종철 군 고문살인사건과 함께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여론을 극도로 악화시켰다. 따라서 정부는 어떻게 하든지간에 이 사건을 무마시켜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했고,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사건을 대충 신속히 얼버무리도록 부산지검 검사장에게 강력히 지시했다. 이때부터 부산지검 검사장과 차장검사는 장관과 총장의 지시에 맹종하여 사건의 진상은 도외시한 채 나의 수사의지를 악화시키고 수사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울산에 작업하러 동원된 수용자들의 조사를 모두 마친 나는 부산의 복지원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 전부를 상대로 수용된 경위, 복지원 안에서의 수용실태 및 가혹행위 유무 등을 조사할 필요를 느꼈다. 특히 젊은

여자들도 수백 명 수용되어 있었으므로 이들이 성적인 가혹행위를 당하지나 않았는지 하는 것도 조사하고 싶었다.

나는 울산의 경찰관들을 20명 가량 동원하여 수사착안사항을 교육한 후 부산으로 내려보냈다. 나는 부산지검에 가서 이같은 사실을 보고했더니 차장검사가 나에게 "미친 놈, 지금이 어느때데 그런 수사를 하느냐"며 즉시 경찰관들을 데리고 울산으로 철수하라고 지시하였다. 나는 그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작업장에서 맞아죽은 수용자의 사체 처리 경위를 조사하다보니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다. 복지원의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부했는데 그 사망 원인을 신부전증이라고 허위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던 것이다. 나는 물론 그 의사를 구속하려 했다. 그러나 검찰총장의 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검사장에게 청탁을 하자 불구속 지시가 떨어져 버렸다. 1975년에서 1986년 사이에 복지원에서 사망한 수용자의 수는 513명이었는데 이들 중 많은 수가 굶주려 죽거나 맞아죽은 것으로 추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이 사건이 한참 여론의 관심을 끌고 있던 때(1987년 3월 22일과 4월 22일)조차 수용자들이 맞아죽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수용자들의 사망 원인까지 조사할 여력이 없었다.

나는 원장이 국고보조금을 얼마나 횡령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자 했다. 국고보조금을 횡령했다는 것은 복지원 수용자들을 굶주려 죽게 하고, 험벗게 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수용자들의 거의 유일한 부식은 김해 들판에 버려진 시든 채소와 도살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인 선지로 만든 해장국이었다. 조사를 받고 있던 수용자에게 규를 하나 주었더니 알맹이를 까먹고는 아쉬운 듯 껌질까지 먹어 버리는 것을 본 일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수사 시작 직후인 1월 21일 "명에 의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수사를 중단하였음"이라는 내용의 정보보고를 법무부까지 보내야 하는 형편이었다. 그렇다고 내가 실제로 이 부분의 수사를 중단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이 부분만큼은 철저히 밝힐 작정이었다.

3개월만에 걸친 천시만고의 수표 추적 결과 원장의 국고지원금 횡령 액

수가 11억 4,254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1985년과 1986년 2년간의 국고 보조금 39억원의 3분의 1에 가까운 돈이었다. 원장은 국고보조금을 횡령하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었다. 3,000여 명의 인력을 사실상 무보수로 활용하여 봉제공장, 목공소, 철공소 등을 운영함으로써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사실 나는 원장의 횡령 액수를 10억원 이상 찾아내려고 노심초사했었다. 법률상 횡령 액수가 1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질없는 일이었다. 검찰 상부에서 공소장 변경 자체를 한사코 불허하더니 5월 19일에 가서야 7억 미만으로 변경하라는 최후통첩을 해와 결국 나는 횡령 액수를 6억 8,178만원으로 변경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재판이 한참 진행중이던 그해 5월에 이르자 감방에 있어야 할 원자아이 박으로 나돌아다닌다는 정보가 입수되었다. 그래서 며칠간 조사해 보았더니 원장은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간다는 핑계로 거의 매일 감방을 나와서는 병원에 잠깐 들러다가 자유생활을 즐기는 것이었다. 나는 병원 앞 건물에 진을 치고 앉아 일일이 사진을 찍어 신문사에 보내주었다. 그리고는 원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자유외출을 시켜준 감방장을 구속하였다.

부산시는 복지원에 수용되어 있던 3,000여 명의 사람들을 좀처럼 석방하려 들지 않았다. 감독관청으로서의 책임을 면하려고, 복지원에 수용되어 있는 자들은 전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고 이들이 석방되어 나오면 부산 전체가 온통 범죄 행위를 일삼는 불량자들로 뒤덮일 것이라는 주장만 늘어놓았다.

그러나 내가 수용자들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수용자들은 대부분 멀쩡한 사람들이었고, 자활 능력이 없어 복지시설의 지속적인 구호를 받아야 할 수용자들은 전체의 10%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밤에 술에 취해 길을 가던 사람들, 역대합실이나 공원 같은 데서 잠자던 사람들, 길 잃은 어린이들 등을 몇 년에 걸쳐 불문곡직하고 잡아다가 복지원에 수용시킨 탓에 그렇게 된 것이었다. 어린이들도 수백 명 잡혀와 어느 날 갑자기 고아 아닌 고아가 되어 있기도 했다.

복지원의 참상이 언론에 계속 보도되자 부산시는 할 수 없이 수용자들을 점차 석방시키게 되었는데 그해 1월 15일에 3,174명이었던 수용자 수가 5월 23일에는 176명으로 줄었다. 3,000명 가까이가 자유를 찾은 것이다. 이것은 나에게 커다란 보람이 아닐 수 없었다.

3,000명 가량이 석방되어 나오자 그들 중 일부는 육교 같은데서 보기 흉한 꼴로 구걸을 하거나 좀도둑질을 일삼아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었다. 그래서 시민들 가운데는 복지원 수용자들을 석방시킨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복지원에서 나와서 길바닥에 앉아 구걸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부산 전체를 통틀어 보아도 100명 가량도 될까말까 하는 정도였다. 이들은 사실 진짜 복지시설에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인데도 부산시가 무책임하게 길바닥으로 내쫓은 것이다.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이야 법 절차에 따라 교도소에 보내면 그만이었다. 범죄행위를 저지르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여 일평생을 복지원 같은 곳에 감금시켜 두어야 한다는 논리는 결코 성립될 수 없다.

전국에는 부산의 형제복지원과 같은 이른바 불량인 보호시설이 여러 곳에 있었다. 대전 성지원, 인천 삼영원, 해남 희망원, 수원 성혜원, 서울 경생원, 동두천 광혜원, 마산 경남종합복지원 등이 그런 시설이었는데 이런 시설들의 사정도 형제복지원의 경우와 대동소이했다. 그러나 전국의 다른 어느 검찰청에서도 이들을 손대지 않았다. 오히려 대전 성지원에서는 1987년 2월 10일 현장조사차 그곳에 간 야당 국회의원들이 폭행을 당하는 사태도 빚어졌다.

전국의 다른 복지원 원장들은 형제복지원 원장으로부터 수천만원씩 돈을 빌려쓰고 있었다. 무슨 이유로 돈을 꾸었는지 나로서는 조사해 볼 여력이 없었으나 이들은 형제복지원 원장을 하늘같이 우러러 섬기는 듯했다. 이들

은 수차 때를 지어 내방에 몰려와 야당과 내통하는 것 같은 데 조심하는 것이 좋을 거라는 등 협박을 해댔다.

노예임대 같은 것도 있었다. 형제복지원에 인력이 제일 많이 있었으므로 다른 복지원에서 좀 빌려달라는 요청이 오면 수용자들을 몇 달라씩 빌려주었다가 돌려받기도 했었다. 무슨 목적으로 수용자들을 빌려갔는지, 그 과정에서 돈이 얼마나 오갔는지는 조사해 볼 여력이 없었지만 수백 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흑인노예들의 임대와 유사할 것으로 짐작되었다.

이래저래 형제복지원 원장에서 신세를 진 다른 복지원 원장들은 1987년 2월 20일 교도소에 안자 있는 형제복지원 원장을 부랑인시설연합회 회장으로 재선출하여 단합을 과시했다. 이들은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여론의 집중타를 맞고 난 다음에야 회장을 다시 뽑았다.

전국의 복지원 수용자들을 합치면 1만 명 내지 2만명 정도로 추산되었지만 다른 복지원 수용자들은 결코 석방되지 않았다. 당시의 다른 복지원 원장들의 행동거지를 보면 복지원에 억울하게 감금되어 굶주리고 얻어맞아 죽고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을 터였는데, 아무도 이들을 구제해 주지 않았다.

3

총리귀하

근간 신체장애자 구결행각이 늘어나고 있다는 바, 실태 파악을 하여 관계부처 협조 하에 일정 단속 보호조치하고 대책과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전두환

1981년 4월 10일자 의 이 지위서신은 형제복지원 같은 부랑인 보호시설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이 지휘서신이 있는 뒤부터 전국의

복지원 수용자 수가 급격히 늘어났던 것이다. 신체장애자뿐 아니라 구결행각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은 모두 잡아다 복지원에 수용시켰다. 구결행각을 한 일이 없는 사람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마구 수용되었다.

형제복지원 원장이 구속되자 보사부장관과 정무수석비서관 등은 부산시장의 장단에 맞추어 재빨리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원 수용자들은 모두 인간구실을 못하는 자들뿐이고, 그동안 복지원에서 호의호식해 왔다. 그런데 울산의 초임검사 하나가 공명심에 사로잡혀 그 훌륭한 원장을 잡아넣었다, 라고. 그러자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에게 왜 검찰이 쓸데없는 일을 했느냐며 빨리 원장을 풀어주라고 지시했다. 이때부터 나의 수난은 시간되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대통령에게 진상이 그렇지 않다고 보고할 의사는 추호도 없이 지시만 충실히 따르기도 한 것 같았다. 부산지검 검사장에게 왜 울산지청에서 원장을 구속하도록 내버려 두었느냐고 질책을 가했다. 그러자 검사장은, 사전에 일언반구도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 때문에 나는 중요한 사건을 검사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시작했다는 누명을 쓰게 되었다.

검사장의 명을 받은 차장검사는 별의별 방법으로 나를 못살게 굴었다. 수사인력 지원요청을 일언지하에 거절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업무상 횡령 부분은 수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가 하면, 복지원 안에 있는 수용자들을 조사하려는 내 계획을 좌절시켰다. 원장을 석방하여 불구속기소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내가 기어코 구속기소하자 이번에는 구속자 일부를 보석으로 석방되도록 해주라고 요구했다.

차장검사는 허구헌날 나보고 수사기록을 모두 들고 부산에 와서 보고하라고 했다. 아침 10시까지 오라고 해서 가면 오후 늦게까지 아무런 보고도 받지 않고 있다가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 내일 다시 오라고 했다. 그런 식으로 내가 수사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검사장이 1987년 2월 26일 원장에 대하여 구형을 얼마나 할 것인지 미리 보고를 하라고 했다. 그래서 징역 20년 구형하겠다고 했더니 15년만 하라고 했다. 그에 따라 그렇게 하겠다고 대검에 보고를 했더니 이번에는 검

찰총장이 10년만 하라고 했다. 나는 사실 원장이 10억원 이상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자 했으나 그때까지는 그만큼 밝혀내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4월 10일에 이르자 원장의 횡령 액수를 11억 4,254만원까지 밝혀냈다. 석 달 가까이 수표 추적 하느라 이 은행 저 은행을 수없이 돌아다닌 덕분이었다. 이제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상부에 보고했다. 대검과 부산지검에서는 나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마냥 때가 좋지 않으니 기다리라고만 했다. 결국 상부의 속셈은 나의 공소장 변경을 좌절시키려는 것이었다.

5월 15일 금요일 저녁, 나는 사표를 호주머니에 넣고 검사장의 관사를 찾아갔으나 관리인이 검사장은 회식에 가서 밤늦게야 돌아올 것이라 해서 그날은 검사장을 만날 수 없었다.

그 다음날 아침 6시 30분에 다시 관사로 가서야 비로소 검사장을 만날 수 있었다. 검사장에게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했더니 대통령이 5월 20일 소년체전 참가차 부산에 오니까 그 이후에나 검토해 보자고 했다. 나는 마침내 선언을 했다. “검사장님, 그렇다면 제가 사직하겠습니다.”

사실 나는 그즈음 상부의 집요한 수사활동 방해에 지쳐 사직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당시 이 사건과 박종철 군 고문살인사건으로 곤경에 처한 전두환 대통령의 정부에 타격을 가하고,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던 민주화운동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사표를 던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생각했었다. 그러나 내가 사직해 버리면 이 사건은 경험 없는 검사가 잘못 시작한 사건으로 오도되어 버릴 가능성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던 것이다.

나의 뜻밖의 선언에 놀란 검사장은 “사건 하나 해가지고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차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검사장은 차장검사에게, 김 검사가 여기 와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우기고 있다고 말한 후 수화기를 나에게 건네주었다.

차장검사는 대뜸 나에게 소리쳤다.

“너 이 새끼 미친 놈 아니냐, 꼭두새벽에 검사장 관사에는 왜 갔어.” 나는 한마디도 안할 수 없었다.

“차장님, 이 새끼 저 새끼 그만하십시오. 이제 그런 말 듣는데 신물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수화기를 내려놓아 버렸다. 검사장은 나의 기세에 놀랐는지 공소장 변경에 동의했다.

내가 원장의 횡령 액수를 1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겠다고 고집을 피우자 검찰총장은 부산지검 차장검사에게 과연 증거나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러는지 직접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한 듯했다. 원장의 비호세력들이 검찰총장에게 그가 국고보조금을 횡령할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수사기록을 단 한페이지도 읽어본 적이 없는 차장검사는 나에게서 들은 풍월을 근거로 멋진 보고서를 만들었다. “당초 수사검사가 수집한 증거를 검토해 본 결과 도저히 공소유지가 안될 정도이므로 이것저것 보완수사 지시를 했다. 그 결과 증거 면에서는 이제 완벽하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다.

내가 바로 울산으로 돌아와 사무실 책상에 앉자마자 검사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공소장 변경을 월요일에 하라고 했다. 월요일 되자 대검의 엄명이 하달되었다.

“횡령 액수를 7억원 이하로 하라. 이것은 직무상의 명령이다”

나는 이에 따를 도리밖에 없었다. 나는 그때까지 정성들여 여러 부 만들어 두었던 공소장의 목록 가운데 일부를 가위로 오려내어 횡령 액수를 11억 4,254만원에서 6억 8,178만원으로 축소한 후 법원에 제출하였다. 오려진 공소장 목록 어디엔가로 나의 눈물방울이 배어들어가는 했지만, 원장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려는 나의 의도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5월 20일 대통령이 소년체전 참가차 부산에 오자 부산시장은 복지원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대통령은 “박 원장은 훌륭한 사람이고, 박원장 같은 사람 덕분에 거리에 거지도 없고 좋지 않고” 라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보는 대통령의 시각은 이처럼 명백하였으므로 검찰의 '윗분'들은 대통령에 대해서 또 한번 면목없어 했다.

나를 못살게 군 것이 검찰의 '윗분'들만은 아니었다. 신문에 뭐라도 하나 새로 보도되기만 하면 보안부대의 장교와 안기부의 직원이 득달같이 달려와 이것저것 캐물었다. 나의 사무실 전화와 집 전화는 모조리 도청되었다.

4

수사를 계속할수록 정부에 대한 혐오감은 점점 커져갔다. 복지원이라는 이름의 이 처절한 인간유린은 원장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비리가 아니었다. 군사반란으로 집권한 대통령의 정부아래서만 저질러질 수 있는 비리였다. 복지원의 참상은 사회복지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할 아무런 계획도 없으면서 겉으로만 복지선진국인 양 행세하려고 한 전시행정이 빚어낸 것이었다.

나는 이 야만적인 정부에 최대한의 타격을 가하기로 결심했다. 수사 결과 여론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새로 드러날 때마다 기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기자들은 열심히 기사화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이 사건에 계속 관심을 갖게 했다. 검찰 상부에서는 복지원 관련기사가 자꾸 보도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지만 정부의 만행을 구김에게 알리고 3,000여명의 노예 아닌 노예들을 석방시키자니 그 길밖에 없었다.

야당에서도 이 사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었다. 신민당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복지원을 방문하는 등 조사활동을 벌였을뿐 아니라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자고 나섰다. 민정당은 보사위원회만 소집하여 얼렁뚱땅 끝낼 작정이었으나 신민당에 의해 실력저지를 당한 데다가 대전 성지원에 조사를 하러 갔던 신민당 국회의원들이 성지원 원장 일당들로부터 얻어맞는 사태가 일어나자 결국 임시국회가 소집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일도 이었다. 이 사건 수사가 한참 진행된 어느 날 저녁, 나는 모처럼 일찍 귀가하여 가족들과 함께 있는데 전화가 왔다. 전화를 건 사람은 신

분을 밝히지는 않고 자기가 나의 아파트 바로 밑에 와 있는데 올라오겠다고 했다. 집에서는 사건관계로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고 했더니, 그는 나를 잘 안다면서 꼭 만나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외면하고 전화를 끊었다.

몇 분 후 내 아파트의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냐고 했더니 아까 전화를 건 사람이라고 해서 나는, 할 말이 있으면 내일 사무실로 오라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랬더니 그는 자기의 신분을 밝혔다. 나도 안면이 있는 울산 출신 국회의원이었다. 나는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아까 전화를 하면서 신분을 밝히지 못한 것은 도청이 겁나서였다는 것이었다. 그는 원장의 배후세력이 누군지를 물었다. 나는 그 말에 대답하는 대신 "저는 전두환 정부를 싫어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두말 없이 물러갔다.

나는 어느 날 서울행 비행기 안에 탑승해 있었다. 당시 야당정치인이었던 YS가 여러 명의 일행들과 함께 같은 비행기 안으로 들어왔다. 일행 가운데 병원을 경영하는 고등학교 선배 한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내가 복지원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그분과 눈인사를 한 후 서울로 왔다. 서울에 도착하자 YS는 출구로 나가는 대신 나의 좌석으로 다가와 "김 동문, 수고가 많지요?"라고 격려했다. 그의 격려는 무척 따뜻하게 느껴졌지만 나는 주위의 시선을 걱정해야 했다. YS를 따라다니는 정보기관원이 또 무슨 보고를 해서 나를 난처하게 만들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었다.

순박한 시민들은 나에게 늘 힘이 되어주었다. 생면부지의 시민들이 내가 지칠 때마다 전화로 도는 편지로 여러 차례 격려해 주었다. 그러 때면 나는 일의 보람을 만끽했다.

5

공소유지는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원장을 위해서 변호사가 여러 명 달라붙었다. 그중에는 바로 얼마전까지 대법원판사로 재직하던 사람도 있었다.

변호사들은 내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부동의했다. 그 바람에 나는 이미 석방되어버린 복지원 수용자들을 모두 다시 찾아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하고 공소사실을 일일이 증명해야 했다. 그들은 또 내가 원장을 고문했다고 하면서 나를 고소한다느니 어쩌느니 하기까지 했다.

변호사들은 원장이 복지원에 그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있었던 행위가 내무부훈령 제410호에 따른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내무부훈령 제410호는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라는 긴 이름을 가진 것인데 1975년 12월 15일 제정되었다.

누가 이따위 훈령을 한 나라의 법령이라고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이 훈령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걸인과 껌팔이 등 부랑인은 연고자가 나타날 때까지 복지원 같은 시설에 무기한 감금해 둔다는 것이었다.

부랑인을 잡아가둘 수 있다는 법령은 수백 년 전 유럽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또 한 번 잡아온 이상 연고자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감금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무리 자활 능력을 갖추게 되더라도 일찍 고아가 된 사람이거나 연고자의 주소를 모르는 사람은 영구히 복지원에 갇혀 살아야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누구나 자기가 원하면 거지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국가는 사회복지시설을 갖추어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할 의무는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마구 감금할 권리는 없다. 가난과 무능력은 보호와 원조의 대상일 뿐이지 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이 훈령이 지닌 더욱 중대한 문제점은 부랑인이 아닌데도 부랑인 취급을 당하여 감금된 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아무것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었다. 사람은 술에 취하다가보면 가끔 길에서 방뇨를 하거나 공원 같은 데서 잠을 잘 수도 있다. 또 기차를 기다리느라고 술 한잔 먹고 역 대합실에서 잠을 잘 수도 있다. 그랬다고 하여 복지원에 끌려가 재판 없이 무기징역을 살아야 된다면 말이 되는가, 형제복지원에는 바로 이런 이류로 무기징역

을 살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다행히 정부는 이 재판이 진행 중일 때 문제의 훈령을 폐지했다. 국제적인 망신거리인 이 훈령이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나마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다.

어쨌든 천신만고 끝에 1심 재판 절차가 거의 끝나 논고를 하는 날이 다가왔다. 나는 여러 날에 걸쳐 정성을 기울여 추상 같은 논고문을 썼다. 그런데 검찰 상부에서 논고문을 미리 보내라 하여 보내주었더니 이것저것 부드러운 말로 수정을 하라고 지시했다. 나는 그 지시에 따라 정부를 공격하는 부분을 빼는 등 논고문의 내용을 대폭 수정해야 했으나 원장에 대한 구형만큼은 징역 15년과 벌금 6억 8,178만원을 나의 소신대로 유지했다.

1987년 6월 23일, 법원은 원장에 대하여 징역 10년과 벌금 6억 8,178만원을 선고했다. 성공적이라면 매우 성공적인 재판결과였다. 그러나 빙산의 일각밖에 밝힐 수 없었던 내 마음은 결코 가벼울 수 없었다.

1987년 6월 25일, 나는 미국으로 출국했다. 사실 나는 1986년에 이미 토플 시험 등 엄격한 선발절차를 통과하여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에서 장기연수를 받기로 결정되어 있었다. 세계의 초강국을 일 년간 관찰하기 위해 나는 미국으로 떠났다. 조국이 좀 더 빨리 민주화되기를 기원하면서.

주임검사가 사라지자 복지원 사건은 국민들의 이목을 떠나 자유롭게 되었다. 재판은 계속되어 원장에 대한 형량은 점점 줄어들었다. 원장은 1987년 11월 12일 1차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사라진 징역 4년을 선고받더니 1988년 7월 7일의 2차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1989년 3월 15일의 3차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한 사건이 일곱 번의 재판을 거치는 사이 원장에 대한 형량은 당초의 4분의 1로 줄어들었다.

원장이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감금한 행위는 대법원의 고집에 의해서 무

죄로 확정되었다. 대구고등법원에서는 유죄라고 생각하는 듯했으나 최종 결정권은 대법원이 행사했다. 대법원은 원장이 오로지 순수 부랑인들만 데려다 내무부훈령이 정한 넉넉한 대우를 다 해주었다는 엉터리 전제 아래서 원장의 행위를 내무부훈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않고 멸정한 사람을 수없이 잡아가두더라도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1986년 12월 21일 이후 만 6개월간 내가 혼신의 정열을 쏟았던 이 사건을 그렇게 끝냈다. 나는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었던 것을 큰 행운으로 여긴다. 비록 나는 고집이 센 검사로 검찰의 '윗분'들에게 낙인이 찍히게 되었지만, 복지원에서 석방된 3,000명 가운데는 자유롭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으리라 믿기 때문이다.

발표 3]

과거의 형제복지원은 지금 현재
형제복지지원재단으로 건재하다.

박민성 사무처장
(부산사회복지연대)

[발표 3]

과거의 형제복지원은 지금 현재 형제복지지원재단으로 존재하다.

박민성 사무처장(부산사회복지연대)

솔직히 오늘 이 자리에서 어디서부터 이야기 드려야 할지 감이 잡히질 않지만 과거 제가 근무했던 참여자치연대와 현재 활동 중인 사회복지연대에서 경험한 것 중심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박인근 형제복지원 대표이사의 영향력

2004년 부산에 사회복지법인대표자협의체가 조직되었다. 이 조직에서 창립행사를 하는데 발제 요청이 왔다. 선뜻 내키지는 않았으나 '복지법인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한 주제이고 법인 대표들을 한자리에 두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발제에 응했다.

그런데 깜짝 놀랐다. 사회복지법인대표자협의체의 화장이 바로 박인근이었다. 이 자리는 사회복지법인대표자협의체 박인근 회장의 취임도 겸하였으며, 부산의 복지법인 중 부산에서 이야기만 하면 알만한 복지법인 이사장, 비리 등의 문제로 거론된 복지법인 이사장 등이 참석했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대표자협의체는 박인근이 사무실 비용을 비롯한 설립비용을 모두 출자하고 복지법인 대표이사를 모았다.

한편, 아래에 이야기 하겠지만 2012년에 드러난 형제복지원 횡령 등의 비리사건에 대해 일부 복지법인 대표이사들이 부산시와 시의회를 대상으로 소명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현재 중풍으로 쓰러져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지만 여전히 박인근은 부산의 복지계에 영향력이 있고, 과거의 영향력을 추측할 수 있다.

형제복지원은 여전이 진행 중이다.

2012년 7월. 형제복지원에 대해 한통의 제보 전화가 왔다. 이 전화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그래서 시의원에게 형제복지지원재단(과거 형제복지원)에 대한 최근의 감사내용과 회계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해줄 것을 부탁드렸다.

그리고 8월 초, 확보한 자료를 확인하다 이상한 내용이 담긴 한 장 짜리 서류를 발견했다. 이 한 장짜리 서류는 뒤에 안 사실이지만 부산시가 실수로 보낸 서류였다. 이 한 장의 서류에는 형제복지지원재단이 법인 소유의 영리시설인 사상해수온천의 리모델링을 위해 2005~2009년 까지 부산상호저축은행에서 118억을 대출하였으며, 부산시가 2009년에 이 대출에 대해 장기차입허가를 해주는 내용이었으며, 깊이 있게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다섯가지의 의문점이 있었다.

첫 번째, 부산시가 장기차입을 허가한 자체였다. 복지법인의 시설이긴 하나 사상해수온천은 엄연히 영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영리적 성격을 가진 시설에 대해 100억이 넘는 대출에 부산시가 장기차입을 허가 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두 번째, 대출을 위한 부산시의 허가는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한 후 허가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번 사상해수온천의 리모델링을 위한 대출은 2007년에 이루어졌고, 부산시는 2009년에 장기차입허가를 했다.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산시의 조치로 공무원과의 유착이 의심된다.

세 번째, 118억의 사용처다. 70억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으로 되어 있지만 나머지는 사용처가 불명확하다. 또한 70억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네 번째, 2010년 구덕원 비리 후 특별감사를 비롯하여 부산시의 각종 감사 때 제대로 된 지적을 받아본 적이 없다.

다섯 번째, 장기차입과 관련한 서류와 장기차입에 따른 대출금 상황에 대한 계획 등이 미비하거나 누락되어 있었다.

의문점을 가지고 부산시에 문제제기를 했고, 부산시는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10일간 형제복지지원재단의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상당히 큰 문제가 있었다. 감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감사결과 요약

1. 법인이 기본재산 매각대금을 장기차입금 상황에 사용하여야 하나 개인적용도로 14억53백만원을 사용하는 등 처분허가 조건대로 사용하지 않음.
2. 사상온천 수입사업회계에서 전 대표이사 박인근 개인이 운영한 타시설(한솔탕)에 2억원을 지급하고 장부상 잡지출 등으로 비용처리 하면서 실제로는 박인근 및 박인근의 사위(김현수)의 개인적 용도로 4억47백을 지출
3. 수익사업의 수익으로 목적사업이 아닌 실로암교회 등에 구제사업 명목으로 7억 8백만원을 지원하고 구제사업비를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자 명의 통장으로 관리하는 등 수익사업 회계 지출
4. 장기차입금 118억원에 대한 정확한 장부상 입출내역을 관리하지 않고 16억원을 인출, 사용용도가 불분명.
5. 허가 없이 임의로 장기차입
6. 회계장부 부실작성 및 외부 회계감사 미실시
7. 법인 기본자산을 실로암교회에 무료 임대
8. 법인의 총자산을 설립당시의 자산액 1백만원으로 등기
9. 법인 목적사업 미이행
10. 법인 정관변경 절차 미이행
11. 사상온천 옥상 건축물 허가없이 불법 증축
12. 건물 증축 공사 시 부당 공사분할 및 수의계약

이 감사결과에 따라 부산시는 기본재산 매각 등 위자료의 1~7번까지의 내용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 및 고발했고 재정상의 조치, 행정상의 조치를 취했다.

이와 아울러 부산시 공무원 14명과 부산시 기장군 공무원 2명에 대한 극히 미비한 경징계를 내렸으며,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비리에 연루될 경우 수위에 따라 징계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으며, 정확하지는 않으나 횡령액 등에 대한 부분은 형제복지지원재단이 환수하는 방식으로 해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되어 지고 있다.

한편, 부산시가 감사를 하는 시기에 사회복지연대에서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 형제복지 지원재단과 박인근의 친인척, 부산시, 정치인과의 관계, 전부산상호저축은행과의 관계 등을 파악했다.

그 결과 박인근의 자녀들의 동산,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이 1,000억대가 넘고, 부산시장은 물론 현 정권의 실세와도 관련이 있으며 저축은행장과는 매우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다.

그러나 이 모든 내용이 정황은 분명하나 물증을 잡기는 역부족이었으며 거대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만 내리고 잠정적으로 중단했으며, 이시기에 취재를 한 kbs 추적60분도 같은 상황이 되어 의혹만 제기하는 수준의 취재밖에 할 수 없었다.

결국 현재는 대응하고 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계속 주시하면서 검찰수사 결과뿐만 아니라 부산시와 부산의 복지법인들의 움직임 등을 주시하고 있다.

복지법인과 싸움은 쉽지 않고, 새로운 대응 방식이 필요하다.

부산은 매년 평균 2~3건 이상의 복지관련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 형제복지지원재단의 비리는 과거에 엄청난 죄를 짓었지만 하나의 복지관련 비리이다.

그런데 늘 경험하는 것이지만 비리가 발생된 곳은 대부분 아무 일 없듯이 넘어간다. 아무 문제제기를 하고 강력한 징계를 요구해도 아무소용이 없었다. 이런 경험을 계속해서 반복하다보니 계속해서 지쳐가기만 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의 복지법인을 만들어서 새로운 모델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방식의 법인이 제대로 운영되면 다른 법인들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바로 현재 부산에서 시도하고 있는 시민이 운영하는 복지법인 '우리마을' 이다.

한두명에 의해서가 아닌 많은 사람이 참여하여 함께 운영하는 방식, 한두명이 돈을 내어 설립하는 것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어 설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고 지금 계속해서 발생하는 비리 등에 대해 두고 보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비리 등은 분명 해결해야 할 중요한 우리사회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발표 4]

지속되어야 할 표현.발언.글쓰기의 과제

전규찬 교수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영상원)

[발표 4]

지속되어야 할 표현·발언·글쓰기의 과제

전규찬 교수(연론연대 대표, 영상원)

한종선이라는 이름으로 출현한 역사의 '괴물'은 이제 그 증인의 몫을 다했다. 더 이상 그에게 기대면 안 된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중대 증언자로 나선 한종선에 대해, 겨우 재개봉되고 재논의되기 시작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도처의 (탈)시설의 문제에 관해, 한국사회 근·현대사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모순이면서도 제대로 말해지고 드러나지 않아 현실을 지지해 온 소수자·약자 인·민 대중 감금·삭제의 폭력/권력에 대해. 오늘 이 자리는 바로 이 중대한 질의를 던지고, 그에 대한 각자의 답을 제출하고 공통의 답안을 모색해 보는, 결코 만만찮은, 시련의 시간이 될 것이다.

나의 생각은 이렇다. 해답/정답/답변이 쉽지 않다는 게 내 소견이다. 우선 첫 번째로, '경범죄 말소'를 외치고 나서는 치안정권의 출범과 더욱 보수·우익화할 정치적 상황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둘째로, 그러한 상황에서, 법적·제도적 해결책을 국회 등을 통해 묘출해 내는 게 실천적으로 쉽게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세 번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만만찮은 연대·연합의 구성체가 필요할 텐데, 현재로서는 아직 그 구심이 많이 약해 보인다. 네 번째, 무엇보다 변화의 힘은 여론 대중들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할 때, 대중들과의 거리도 한참 멀다.

그래서 현재로서 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종선으로 하여금 더욱 잘 말하(게 하)고 그와 더불어 복지원 문제에 관해 토론(가능토록)하며, 계속해서 감금·감시·훈육·처벌의 폭력/권력에 대해 글을 쓰고 그림 그리는 작업이다. 기억을 기록으로 구성하고, 기록을 역사로 구체화하며, 그럼으로써 빈 역사를 암울과 공포의 현장성으로 채우는 것이다. 일반 대중의 무지와 무관심을 당사자 연루성, 책임성의 부담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국가 권력/폭력/(경범죄)처벌의 문제와 종선/복지원/시설/감금의 문제,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안전/공포의 문제를 상호 결부시키는 일이다.

종선을 일개인이 아닌 '우리'의 일원으로 계속해서 소개하는 일, 형제복지원을 과거지사가 아닌 현재진행형의 사태로 복원시키는 일, 그리고 시설·감금을 던 남의 문제가 아닌 바로 나에게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위기로 댕겨내는 일. <살아남은 아이>가 보인 현재의 효과성도 바로 그 교통가능성(communicability)에 있지 않았는가? 지속적인 글쓰기와 담론화 작업의 연쇄를 통해 바로 그런 결과가 더욱 강화되도록 하는 게 현재로서 나나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일이자 가장 급한 일이라는 생각이다. 말을 만들어 내는 것과 현실을 바꾸어 내는 것은 결코 무관치 않은 운동의 전략이다.

마르크스의 말을 쫓아, '래디컬(radical)'하게 말해 보자면, 내가 종선과 한 작업도 '말하는 입'을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그 인간의 입을 통해 인간의 언어가 유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짐승 취급한 국가 권력/복지원 폭력이나 짐승의 아우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일반 대중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인간적 언어를 통한, 인간적 대화의 동작이었다. 말과 글은 회피하기는 어렵다. 인간적으로 뺄은 언어는 미등도 없던 여론을 움직이면서 강고한 권력/폭력에 파열을 낸다. 나는 <살아남은 아이>가 그랬다고 믿는다. 그래서 여전히 말하기, 말하도록 하기, 글쓰기, 그림 그리기가 답이라는 것이다.

오늘과 같은 토론회도 좋지만, 연극을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림의 전시를 기획해야 한다. 종선의 특별한 경험, 복지원의 일반적 상황이 그래서 일반 대중의 보편적 인식과 접속토록 해야 한다. 그래야 더욱 유의미한 권력의 동요, 의미 있는 폭력의 소거가 가능해진다. 이런 것조차 과한 욕심이라면, 우선 당장 훨씬 더 정밀하고 체계화된 탐사·취재·역사·기록의 저널리즘 작업을 책의 형태로 해내도록 한다. 한국 근현대사를 '대감금의 역사'로 다시 쓰는 것이다. (국가)산업화/민주화(운동)의 이분법적 배치에 (소수자)감금의 역사를 보다 정확한 위치에 끼워 넣는 것이다.

그래서 제안이다. <살아남은 아이>의 후속작업을,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공동/공통의 프로젝트로 착수하자. 주제에 관심있고 전문적 실력을 제공할 법학자와 역사학자, 사회학자, 정치학자, 인권운동가, 언론학자, 저널리스트 그리고 수감자 당사자들을 모아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 나는 미디어는 어떻게 부랑인/시설/감금의 현실을 다루었는지 비판적으로 복기해 볼 수 있겠다. 물론 이러한 노력으로 충분치 않을 것이다. 국회와 인권위 등을 통해 법적·제도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노력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러한 노고는 인권단체, 인권 활동가들이 좀 더 특별하게 말아야 할 것이다.

형제복지원과 진실에 대한 권리

이재승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법철학)

형제복지원과 진실에 대한 권리

이재승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법철학)

I. 잊혀진 희생자

형제복지원은 과거사인가? 이 질문은 두 가지를 내포한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지난 10여년의 정치적 해빙기에 정리된 과거인권침해 사건들에 버금하는 것인지 그래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필요한 사건인지에 대한 물음이 하나이고, 지금 한국 사회의 다양한 형태의 수용시설들이 인권 친화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다른 하나이다. 과거의 수용시설과 현재의 수용시설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지 의문이지만 이 글은 과거 인권침해사건의 피해자로서 수용자들이 어떠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집중해보겠다. 사건으로서 형제복지원은 당국의 억압적인 수용정책과 사적인 시설운영자들의 이해관계가 결합하여 7~80년대의 주거 부정자, 부랑아, 장애인 등 하층민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한 사건이다. 그러나 87년 복지원 시설운영자에 대한 형사소송과 여론의 초점은 사실 '고래에게 통 던지기'와 같이 국가책임을 민영화하고, 국가범죄를 개인화하는 단전피우기 소송이었다. 시설운영자의 체포감금죄 처벌이 사태를 바꾸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층신분, 하층계급에 대한 적대시와 압박은 권위주의 시대, 극우적인 독재자 아래서 극단적으로 나타나지만 이러한 억압과 차별이 반드시 극우독재체제 아래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시설수용자로서 피해자들이 정치적 독재의 희생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회문화적 독재의 희생자라는 측면이 더욱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치적 독재에 의해서만 억압받는 사람들은 그러한 독재가 종식되면 거의 모든 것이 회복되지만 사회문화적 독재의 희생자라면 정치적 독재가 종식된다고 해도

사태가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독재는 거시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청산할 수 있겠지만, 사회문화적 독재는 철저하게 미시정치적으로, 비제도적으로 청산까지 병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과거청산에서 일정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사의 희생자들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 번째 주요범주는 권위적인 지배세력과 정치적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체제를 개혁하려는 대안세력, 두 번째 범주는 지배세력뿐만 아니라 개혁세력조차도 정치적 적으로 간주하는 급진세력, 세 번째 범주는 강고한 사회적 역할과 위계제 아래서 쓰레기로 분류되어 배제되는 그룹이다. 과거청산은 첫 번째 그룹이 주도하고 이들의 시각에서 일정표가 만들어진다. 이 그룹은 박해를 받았지만 특별히 과거청산 작업을 전개하기도 전에 비판적 사회대중의 지지를 통해 정치적 명예를 회복하고 그런 점에서 기성체제의 비판적 일부로 지속한다. 이들은 적절한 시점에 기존의 권력을 교체한다. 과거청산 작업은 인권관념이 좌우를 넘어 확산되거나 사회적 신분의식을 뚫고 심화되는 경우에 두 번째 그룹과 세 번째 그룹에게도 빛을 준다. 두 번째 유형의 희생자중 일부가 정치적 인정과 명예회복을 달성하게 되면, 세 번째 그룹의 희생자도 권리자, '권리를 가질 권리'(아렌트)를 가진 자로 인정받기 시작한다. 사회적 의식 속에서 이러한 인정의 서열은 워낙 완고하기 때문에 '심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독일은 나치시대의 불법행위를 청산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1956년에 나치배상법(Bundesentschädigungsgesetz)을 제정하였지만 나치체제의 희생자 전부를 포용하지 않았다. 정치적 자유주의자들, 유대인 희생자들을 중심으로 피해자를 규정하였기 때문에 급진주의자들이나 반사회적인 집단을 보상 과정에서 배제하였다. 전자는 정치적 냉전구도 속에서 억압당한 자라면, 후자는 속물적인 청결유토피아에 의해 억압당한 희생자였다. 이른바 반사회적 인물, 강제노동자, 동성애자, 강제불임자, 안락사-피해자 등은 현저한 시차를 두고 최근에 와서 희생자로 인정되었다. 체제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상 투쟁도 근본적인 인정 투쟁²⁾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논의가 이제야 시작된 것도 이러한 의미에서

2) 세계인권선언 제6조: 사람은 누구나 어디에서든지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right to recognition)를 가진다.

법칙적 측면을 나타낸다.

형제복지원은 기도하고 함께 노동하는 낙원이나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시설도 아니었다. 형제복지원은 법령상의 형식적 근거³⁾는 있지만 정상적인 수권이나 규범의 한계를 지키지 않았다. 사람을 강제로 수용하고 강제로 노동시키는 데에 법령상의 형식적 근거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독일의 모든 수용소도 법령상의 근거는 완벽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근거법령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 및 절차가 헌법의 일반적인 법치국가적 원칙을 준수했는지가 중요하다. 타인에게 구체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데도 미관, 도시정화를 이유로 시설에 강제수용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용납하기 어렵다. 노동을 싫어한다고 해서 그에게 강제적으로 노동운리를 주입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가 아니다. 인간이라면 가능한 한 유한계급처럼 노동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법령의 목적과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면 위헌이고, 위법일 수밖에 없다. 2010년에 대법원이 유신시대의 긴급조치(제1호)마저 위헌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상기하자.⁴⁾ 형제복지원의 입소와 운영은 일반적인 복지시설의 입소과정과는 다르다. 입소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본인과 가족의 의견을 반영하여 입소·퇴소가 결정되는 방식이 아니었다. 전반적으로 그러한 시설은 복지시설이 아니라 강제수용소(concentration camp)로 분류해야 한다. 내무부훈령 410호는 나치시대의 인종법시행령(1938)과 매우 흡사하다. 나치 독일은 반사회적 존재(Asoziale)로서 집시(신티족과 로마족)들을 강제로 수용하고, 강제로 노동시키고, 절멸까지 시도하였다. 나치수용소가 인종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배제와 박멸까지도 추구하였다면⁵⁾, 복지원은 국가의 사회적 배제정책과 시설 운영자의 사적 이익을 동시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독재자들은 언제나 우열에 입각한 인종주의, 인간구실론에 입각한 산업주의적 노동교화, 부랑아

3)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1975년 12월 15일 내무부 훈령 410호(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이 제정되고 전국 각시와 경찰에 내부 업무 지침으로 전달되었으며, 이것이 이른바 부랑인의 예외상태(exlex 法外人)를 합법화하는 장치이다.

4) 대법원 2010.12.16 선고 2010도6986 판결.

5) 이것은 민감한 주제이다. 나치배상법은 인종을 이유로 한 박해와 피해에 대해 배상하겠다고 규정하였는데, 독일의 법조는 집시에 대한 수용은 인종주의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단순' 부랑인 사회정책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신티족과 로마족은 스스로 하나의 '민족'임을 주장함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었다.

주거불안정자 장애인이 없는 청결유토피아, 사이버진화론에 기초한 인류개조론을 신봉하며 반사회적 존재에 대한 추방과 박멸을 거리낌 없이 추구한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인권(헌법상의 모든 기본권)의 총체적 침해이다.⁶⁾ 사회적 주변인이라고 상정된 그룹을 그 의사에 반해서 사냥하여 수용하고, 노동과 훈련을 부과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정책은 체계적인 인권범죄이자 불법행위이다. 국가측의 공격적이고 체계적 프로그램과 시설측의 수용관리가 결합하여 총체적인 인권침해를 야기하였다. 낡은 스타일의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국제법상의 범죄(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⁷⁾라고 할 수 있다. 국제법상의 범죄는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금지하는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의미한다. 국제인도법, 인종차별철폐조약, 아파르트헤이트조약, 인신매매금지조약, 여성차별철폐조약, 고문방지조약상의 금지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조약상의 범죄 이외에도 관습법상의 국제범죄가 존재한다.⁸⁾ 복지원의 수용과 박해는 세계인권선언, 자유권 규약, 고문방지협약이 말하고 있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에 해당하고, 지금까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실을 은폐하고, 적절한 배상을 시행하지 않는 상황 역시도 “잔인하고 비인도적이 굴욕적인 처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형제복지원은 이른바 지난 10여년의 과거청산 작업과정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못했다. 이른바 시설의 폭력문제는 대체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으로서 현재적인 문제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시설운영자의 형사책임이 다른 모든 책임을 덮어버리는 작용을 하였기 때문에 인권문제로서 부각되지 못했다.⁹⁾ 그러나 형제복지원 사건은 당연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을

6) 자세한 실상은 한중선/전규찬/박래군, 살아남은 아이, 문주, 2012.

7) 세계인권선언, 제11조 2항 참조.

8) Henckaerts, Jean-Marie & Doswald-Beck, Louise, *Customar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Vol. 1: Rul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9) 필자는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책임보다는 민사배상책임을 더욱 중요한 수단으로 이해한다. 형사책임은 궁극적으로 민사책임을 희석시키거나 배제하고 전체적인 책임 연관d에서 최고책임자들을 빠져나가게 하며 직업범죄 수준의 중간관리자들을 처벌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책임전가과정에서 대중은 관리자에게 분노하면서 공범의식을 동시에 희석시킨다. d이제 희생자들의 권리는 방치된다.

것이다. 진실화해법이 말하는 “기타 중대한 인권침해사건”¹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권침해사건으로서 형제복지원 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가?

II 역사적 사례들

형제복지원을 설명하기 위하여 더욱 근접한 예를 찾아야 하겠지만 현대사에서 진행중인 유명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해보겠다.

1. 나치독일의 수용소

나치독일이 수행했던 작전 T4(Aktion T4)과 노동기피 왕국 작전(Aktion Arbeitsscheu Reich)을 거론해야 할 것 같다. 작전 T4¹¹⁾는 유전보건법(Gesetz zur Verhütung erbkranken Nachwuchses 1933년 7월 14일)에 기초한다.¹²⁾ 이 법에 입각하여 안락사와 강제적인 불임수술이 시행되었다. 40만명의 남녀가 불임수술을 받았으며, 그중에서 6,000명이 사망하였다. 동시에 뉘른베르크 인종법으로 알려진 혈통보호법(Gesetz zum Schutz des deutschen Blutes und der deutschen Ehre 1935.9.5.), 그리고 혼인보건법(Gesetz zum Schutz der Erbgesundheit des deutschen Volkes 1935.10.18.)도 제정되었다. 작전 T4 안락사프로그램에 따라 1939년 5천명 이상의 아동이 살해되었고, 이어서 장애를 지닌 시설수용자를 포함하여 7만 명의 성인안락사가 시행되었다.

이른바 살 가치가 없는 생명의 절멸(Vernichtung lebensunwerten Lebens)은 전후에 소련 점령지구에서는 인도에 반한 죄(crime against humanity)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미군당국은 강제불임의 기초가 된 이 법에 대하여 찬반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다. 전쟁범죄로 다루지 않는 이유는 20세기 초부터 독일과 미국간의

1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제2조 4.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필자가 4호를 언급한 이유는 이 호가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 국가범죄와 중대한 인권침해를 나열하고 있기 때문이다.

11) T4는 특별한 암호가 아니며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소재하는 거리의 첫 글자와 번지를 결합한 것이다.

12) 이 법은 유전병판정재판소의 불임결정 파기법률(1998.8.25)에 의하여 무효화되었다. 이재승, 국가범죄, 518쪽 참조.

우생학적 공동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독일의 우생법을 반대했지만 미국은 오히려 지지하였고, 전쟁직전까지도 협력하였으며, 1937~38년에 유전병에 관한 독일영화를 대학에서 상영하였을 정도이다. 1957년 독일의회는 우생학적 사고는 전형적으로 독일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 발언은 이러한 조치의 희생자는 나치불법의 피해자가 아니고 따라서 보상할 필요도 없다는 결론을 함축한다. 1956년의 미국에도 27개주에서 불임 프로그램(강제 불임 포함)이 운영되었다. 따라서 미군당국이 나치패망 직후에 이른바 살 가치가 없는 생명에 대한 공격을 나치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모순을 범하는 것이었다.¹³⁾ 1938년 인종법시행령(1935년 독일혈통과 독일명예보호법) 이후에 비록 범죄행동은 아니지만 반공동체적 행위를 하는 사람을 반사회적 존재라고 규정하였다. 경찰은 노동 혐오 왕국(Arbeitsscheu Reich) 작전을 통해 1938년 6월 13일부터 18일 사이에 '반사회적'이라고 분류된 사람들을 20,000명 이상 체포하여 강제수용소로 이송하였다. 작센하우젠 수용소에만 약 6,000명이 구금되었고, 수용소에서 반사회적 존재로서 검정색(처음에는 갈색) 인식표를 패용했다. 나치체제에서 노동혐오라는 비난은 이른바 반사회적 존재를 지칭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부랑자, 결인, 매춘부, 집시, 알콜중독자, 전염병 및 성병 보균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식의 감금조치는 서브프롤레타리아(subproletariat) 집단의 훈육에 봉사하였다.

연합국의 군정종료 후 독일은 나치배상법(Bundesentschädigungsgesetz 1956)을 제정하여 나치희생자들에게 연금형태의 금전적 보상을 장기적으로 지급하였다.¹⁴⁾ 그러나 이 배상법은 나치불법체제 하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를 전보하려는 것이 아니었으며, 불법행위의 시점에 독일인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일정한 유형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보상청구권을 인정하였다. 세계관, 종교, 인종, 정치적 이유에 의하여 나치의 박해를 받은 자만이 여기에 해당한다. 동일하게 박해받더라도 박해의 이유가 결정적인 기준이 되었다.¹⁵⁾ 박해의 이유가

13) von dem Knesebeck, Julia, *The Rome Struggle for Compensation in Post-War Germany*, University of Hertfordshire Press, 2011, 133-34.

14) 이재승, 국가범죄, 191쪽 이하. 비교적 상세한 연구로는 야노 히샤시, "독일의 과거극복", 나카노 도시오.김부자(편저), [역사와 책임], 2008, 236쪽 이하.

나치즘과 직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가 입은 피해는 이 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없었다. 나아가 독일의 전후 보상과정에서 자유민주적 질서와 양립할 수 없는 자들(공산주의자들)¹⁶⁾이나 반사회적인 그룹(asoziale)¹⁷⁾은 배제되었다. 후자의 대표적인 사례들은 탈영병, 병역거부자, 선동행위처벌법 위반으로 구금된 자(외국방송 청취자 등), 이른바 반사회적 인물, 강제노동자, 동성애자, 강제불임자, 안락사-생존자 등이 이러한 부류에 속했다. 이들도 차츰 나치 희생자라고 재평가되어 보상금도 수령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에게 제공된 보상금은 엄밀히 말해서 보상금이라기보다 생활지원금의 성격에 가깝다.

앞서 언급한 그룹은 나치배상법(Bundesentschädigungsgesetz 1956)에 의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고, 전쟁결과조정법(Kriegsfolgensgesetz 1957)에 따라 지원금(Beihilfe)을 받게 되었다. 유전병후손방지법은 나치적 성격을 갖지 않으며 법치국가적으로 성립한 법이라는 견해가 당시에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독일재무부자료를 살펴보면,¹⁸⁾ 강제불임수술자는 2,556.46유로의 일회적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매월 100마르크 한도(88년 기준)에서 연금을 수령하였다. 이 액수는 2011년에는 291유로로 인상되었다. 강제불임 시술자가 추가적인 경제적 곤궁상태를 증명하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방침은 1990년 이후에 동독지역의 희생자들에게도 확대 적용되었다. 1980년부터 1999년 사이에 강제불임 시술의 희생자들은 13,709건의 일회적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9,485건의 정기금을 수령하였다. 안락사 희생자들도 일회적인 2,556.46유로의 지원금과 매월 291유로를 지급받았다. 예외적인 경우에 추가적인 정기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¹⁹⁾ 동성애자들의 경우에는 수용소 강제수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지원금을 받았다. 형기

15) 민주화보상법에서 '민주화운동관련성'이 관문 역할을 하면서 도덕적 비난을 피하지 못한 것과 같다.

16) 나치배상법 제6조 제1항 2호는 '1949년 5월 23일 이후에 독일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fdGo)에 대항한 자'에게 배상청구권자의 자격을 배제하고 있다.

17) Sinti und Roma fordern Entschädigungen(1998.9.4.), <http://www.welt.de/print-welt/article625894/Sinti-und-Roma-fordern-Entschaedigungen.html>

18)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Entschädigung von NS-Unrecht, (2012/11), 22쪽 이하.

19)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정은

http://www.euthanasiegeschaeftigte-zwangssterilisierte.de/bez_rehabilitation.html

를 마치고 예방목적으로 수용소에 수용되어 강제노동을 한 상습범죄자들, 노동기피, 노동거부자, 부랑아, 반사회적 인간이라는 이유로 수용되어 강제노동을 한 사람들도 전쟁결과조정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2. 호주의 빼앗긴 세대

호주에서는 18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원주민의 문명화라는 명분아래 원주민 아동들을 그 가족에게서 강제로 격리하여 백인가정이나 시설에 위탁하여 양육하였다. 애버리진과 토레스 해협 도서민들이 주된 피해자들이었는데 강제격리된 아동수가 약 100,000에 이르렀다. 식민주의와 인종주의적 격리정책의 성격규정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란이 되었다. 호주인권위원회는 1997년 공식적인 보고서(Bringing Them Home)에서 그러한 격리는 부도덕하고 불법적이었다고 선언했다. “원주민 아동 격리에 대한 호주의 행태는 국제법에 규정한 체계적인 인종차별이자 제노사이드이다. 호주가 자발적으로 가입한 조약에 의해서도 격리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었지만 당국은 조약에 가입한 후에도 오랜기간 격리를 공공정책으로 계속 시행하였다.”²⁰⁾ 위원회는 아동격리가 법적인 수권에 의한 것일지라도 그것은 차별적이고 제노사이드와 같은 것(genocidal)²¹⁾이라고 지적하였다. “위원회는 강요, 협박이나 부당한 압력에 의한 원주민 아동 격리가 보통 법에 근거한 것임을 인정하지만, 그러한 법률들이 원주민이나 여타 호주인이나 동등하게 향유해야 했던 보통법상의 근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점도 인정했다.”²²⁾

호주인권위원회는 빼앗긴 세대에 대하여 백서를 발간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반보벤 원칙²³⁾에 따라 해법을 제시하였다. 2008년 호주 총리 케벤 러드가 원주민들에게 화려한 사죄문—도의적 책임의 인정²⁴⁾—만 발표하였을뿐, 사죄에 상응하는

20) *Bringing Them Home*, 231쪽.

21) 제노사이드 방지조약 제2조 본 협약에서 집단살해라 함은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로서 행하여진 아래의 행위를 말한다.

(e)집단의 아동을 타집단으로 강제적으로 이동시키는 것

22) *Bringing Them Home*, 241쪽.

23) 제2절에서 다루는 피해자 권리장전에 반보벤의 성과들이 반영되었다.

24) Apology will not legally impact compo claims: Law Society, <http://www.abc.net.au/news/2008-02-13/apology-will-not-legally-impact-compo-claims-law/1041134>>

실질적인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와 동시에 빼앗긴 세대의 피해자들이 호주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소멸시효(limitation of actions), 합법적인 조치--원주민 아동의 격리를 밀받침하는 당시의 법률(Aboriginal Ordinance 1918)이 당시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논리--, 증거부족 등을 내세워 빼앗긴 세대의 권리구제를 외면하였다.²⁵⁾

초기 사건에서 뉴 사우스 웨일스 항소법원은 시효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정의하고 불합리하다고 결정하였다.²⁶⁾ 후속재판인 큐빌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시설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당국의 불법행위를 증명하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면서 증거불충분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²⁷⁾ 빼앗긴 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승소한 인물이 트레보로우이다. 남호주최고법원은 소제기에 필요한 정보를 국가만이 알 수 있었고, 국가가 정보를 원고에게 불법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시효를 연장하였다.²⁸⁾ 승소판결후 1년도 못되어 원고가 사망하였으며, 이 결정은 남호주 항소법원에 의해 유지되었고,²⁹⁾ 주정부는 상고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신의칙에 입각한 판결과 유사하다. 어쨌든 호주에서는 아동격리의 본질에 대하여 여전히 논란중이며, 그에 대한 적절한 배상프로그램도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전망도 밝지 않다. 일반적으로 식민주의와 연결된 인종주의 정책은 대체로 문화정책으로서 강력하게 옹호되는 경향이 존재한다.³⁰⁾

25) Buti, Antonio, *The Stolen Generations and Litigation Revisited*, *Melbourne University Law Review*, Vol. 32(2008), 382, 416-17.

26) *Williams v Minister*, *Aboriginal Land Rights Act 1983* (No. 1) (1994) 35 NSWLR 497, 514-15. 이 사건에 대해서는 Read, Peter, *The Stolen Generations, the historian and the court room*, *ABORIGINAL HISTORY*, Vol. 26(2002), 51, 53.

27) *Cubillo v Commonwealth* (No. 2) (2000) 103 FCR 1, 443, *Cubillo v Commonwealth* (2001) 112 FCR 455, 572.

28) *Trevorrow v South Australia* [2007] SASC 285, para. 911. 1956년생인 호주원주민 브루스 트레보로우는 두 살이 안 되어 부모와 강제로 격리되어 백인가정에 위탁되어 10살이 되어서야 생모를 상봉할 수 있었고 67년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트레보로우는 강제격리를 이유로 주당국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남호주 최고법원은 당국에 대해 트레보로우에게 775,000달러를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2007.10.1). 이 사건에 대해서는 Genovese, Ann, *Metaphor of Redemption, Myths of State: Historical Accountability in Luhrmann's Australia and Trevorrow v South Australia*, *Griffith Law Review*, Vol. 20(2011), 67쪽 이하.

29) *Trevorrow v South Australia* [2010] SASC 56.

30) 언어교육 자체를 문화적 제노사이드로 다루는 견해로는 Skutnabb-Kangas, Tove, *Linguistic Genocide in Education or Worldwide Diversity and Human Rights*,

3. 미국의 불임수술

미국에서 우생학적 유전학적 통제이론은 나치독일과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최근에 주목을 끌었던 곳은 노스 캐롤라이나주 우생학위원회이다(The Eugenics Board of North Carolina (EBNC)). 이위원회는 1933년 노스 캐롤라이나주 강제불임법(Bill 1013, entitled 'An Act to Amend Chapter 34 of the Public Laws of 1929 of North Carolina Relating to the Sterilization of Persons Mentally Defective')에 의해 설치된 주립위원회이다. 위원회의 직무범위는 처음에는 순수한 유전학에 관한 것이었으나 시간이 가면서 빈곤 및 복지 비용과 투쟁하는 수단으로서 불임수술을 고려하였다.³¹⁾ 원래의 의도는 공공시설의 재소자나 환자로서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심신이 박약하다고 당국이 판정한 자에 대하여 불임수술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미국 전역에서 시행된 우생학 프로그램과 달리 노스캐롤라이나 위원회는 군복지담당부서에 고객의 불임수술을 신청하도록 허용했다. 위원회는 1977년까지 운용되었으며, 이러한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 수천명이 불임조치를 당했다. 1977년에 의회는 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는 법을 철회하였지만 2003년이 돼서야 비자발적인 불임수술 법이 폐지되었다.³²⁾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정부로부터 7,600명의 여성이 강제불임수술을 당했으며, 성생활이 문란하거나 학습장애, 빈곤층, 알코올 중독이 있는 여성 등을 대상으로 강제 불임수술을 벌였다. 대부분 아프리카계나 소수계 여성이었다. 우생학 프로그램을 운영한 주는 노스캐롤라이나를 포함해 31개 주에 달했다. 대부분 1929년부터 1974년까지 이 법을 시행하였으며 상당수 여성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불임수술을 받았다. 2000년 들어 우생학 프로그램을 운용했던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불임수술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50,000달러를 보상해주기로 발표하였다.³³⁾

Lawrence Erlbaum, 2000.

31) 1927년 Buck v. Bell 사건(274 U.S. 200)에서 미국법학의 영예인 홈즈(Oliver Wendell Holmes) 판사도 우생학적 견해를 지지할 정도였다.

32) Eugenics Board of North Carolina,

<http://en.wikipedia.org/wiki/Eugenics_Board_of_North_Carolina>

33) 고은아, IQ 70 이하는 애 가질 자격 없다? 강제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91478>

II. 피해자의 권리

1. 국제사회의 원칙

과거사위원회의 각종보고서들이 인권침해적인 관행들을 낱낱이 지적하고 개선 조치를 촉구하였지만 진행중인 후속작업은 개인의 권리구제에 한정된다. 이 문제에 관해 국제적인 원칙들--반 보벤 원칙들--을 거론해보자. 유엔은 <권력범죄와 남용의 피해자를 위한 정의의 기본원칙(1985)>³⁴⁾과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의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2006)>³⁵⁾을 확립하였다. 전자가 국내적인 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후자는 국제적인 범죄, 특히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심각한 위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후자는 "피해자의 국제권리장전(international bill of rights of victims)"으로 불리고 있다. 바수오니는 이 원칙이 종래 갈등중심적인 국제인도법이나 국제인권법에 피해자 시각을 도입한 것이라 평가한다.³⁶⁾ 두 문서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청산한다는 기본 목적에서 보자면 동일한 법리를 발전시킨 것이다. 2005년 유엔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가 채택한 <불처벌 투쟁 원칙>³⁷⁾도 피해자의 권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문서이다. 피해자 권리장전 제11조는 재판받을 권리(right to justice), 배상받을 권리(right to reparation), 알 권리(right to know)를 피해자의 권리로 요약하고, 더욱 세밀한 권리목록을 제시한다. 투쟁원칙은 피해자의 개인적 권리구제에 머물지 않고 권리구제의 구조적 차원을 주목하고 있다. 과거청산 작업이 피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34) 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A/RES/40/34)

35)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A/60/509/Add.1)

36) Bassiouni, M Cherif,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Victim's Rights, Human Rights Law Review Vol. 6, 204이하.

37)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MPUNITY -Report of the independent expert to update the Set of principles to combat impunt, Diane Orentlicher: Addendum-Updated Set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hrough action to combat impunity. E/CN.4/2005/102/Add.1 8 February 2005.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인권침해의 재발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으로서 사회의 구조들을 겨냥하고 있다. 이것은 피해자의 민주주의에 대한 권리(right to democracy)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2. 진실에 대한 권리

1) 인권이사회의 결의

진실에 대한 권리를 오늘날 가장 포괄적으로 열거한 문서는 <불처벌 투쟁원칙>이다. 인권이사회의 결의는 불처벌과의 투쟁을 크게 알권리, 재판에 대한 권리, 배상 및 재발방지에 관한 권리로 나누고 있다. 이 결의는 진실에 대한 권리들을 강조한다.

① 국민의 진실에 대한 불가양의 권리(제2원칙)

모든 국민은 끔찍한 범죄의 발생에 대하여, 대량의 또는 체계적인 침해를 통해 그러한 범죄의 발생에 이르게 되었던 상황과 이유에 관해 진실에 대한 불가양의 알 권리를 가진다. 진실에 대한 권리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행사는 권리침해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 필수적인 안전판이다.

② 기억을 보존할 국가의 의무(제3원칙)

억압의 역사에 대한 국민의 지식은 유산의 일부이며, 이러한 지식은 인권법과 인도법의 침해와 관련하여 문서고와 여타 증거를 보존할 국가의 의무 및 이러한 침해에 관한 지식을 접근하기 용이하게 할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적절한 조치들을 통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한 조치들은 집단적 기억이 멸실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수정주의나 부인주의 주장(revisionist or negativist arguments)에 맞서서 이루어져야 한다.³⁸⁾

③ 희생자의 알 권리(제4원칙)

온갖 법적 절차에 상관없이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인권침해가 발생했던 상황,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운명에 관한 진실에 대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 알 권리(the imprescriptible right to know the

38) 이에 대한 고전적인 문제가 바로 홀로코스트 부인자에 대한 처벌논쟁이다. 이재승, 국가 범죄, 541쪽 이하.

truth)를 가진다.

* 진실을 알 권리는 시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실에 대한 권리를 매개로 최소한 국가 책임범위 안에서 자행된 실종, 사망, 피해에 대하여 진실규명을 요구할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이 권리가 모든 과거사의 논의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결론은 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의 반대해석에 의해서도 나온다. 국가재정법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관해서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의무가 아닌 경우에는 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³⁹⁾ 예컨대 불처벌 투쟁원칙, 정보공개법,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에 기초하여 이러한 알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④ 알권리의 보장(제5원칙)

국가는 사법부의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작동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알권리를 실효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는 적절한 조치들 속에는 사법부의 역할을 보완하는 비사법적인 과정이 포함될 수 있다. 대량으로 또는 체계적으로 자행된 끔찍한 범죄를 겪은 사회는 그러한 인권침해를 둘러싼 사실을 확정하여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특별히 진실위원회나 증거의 일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실위원회나 여타 조사위원회의 설치로부터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 국가가 그러한 기구를 설치했던 하지 않았던 관계없이 국가는 인권 및 인도법의 침해에 관한 문서들의 보존과 그에 대한 접근을 확보해야 한다.

⑤ 기타 문서들의 보존과 관리(15원칙)

알권리는 문서들(archives)의 보존의무를 포함한다. 특히 인권법과 인도법의 위반행위자들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문서고를 제거, 파괴, 은닉, 훼손하는 것을 방

39)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③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④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지하기 위해 기술적인 조치들과 처벌을 활용해야 한다(제14원칙). 피해자와 그의 관련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문서고에 대한 접근이 확보되어야 한다. 관련자들에게 필요한 경우 자신의 방어를 위하여 문서고에 대한 접근이 확보되어야 한다(제15원칙).

2) 진실에 대한 권리의 발전과정

진실에 대한 권리가 존재한다면 국가는 강제실종이나 의문사 등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의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진실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활동을 지원해야 하고 스스로 적절한 조사기구나 수사기구를 통해서 진실에 대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국가는 과거사위원회 등에 대한 피해자들의 조사신청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구가 존재하지 않거나 일반적으로 국가기구가 조사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실에 대한 권리가 피해자의 독자적인 권리가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유럽인권법원이나 미주인권위원회, 미주인권법원의 결정을 정리하면 국가가 실종자의 최후에 일정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지역인권협약상의 진실에 대한 가족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위원회나 법원이 진실에 대한 권리의 근거로 들고 있는 지역적 인권규약상의 권리조항은 비인도적 처우금지규정과 재판받을 권리 등이다. 이는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ICCPR)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금지(제7조), 재판받을 권리(제14조)와 같은 내용이다. 따라서 한국헌법의 규정이나 ICCPR 해당조항들을 원용하여 진실에 대한 권리를 논증하여 국가에게 조사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진실에 대한 권리는 국제법적으로는 제네바협정 제1추가의정서 제32조에 등장하였다.⁴⁰⁾ 강제실종협약 전문은 “강제실종의 상황과 실종자의 운명에 대하여 진실에 대한 피해자의 알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진실에 대한 권리는 유엔총회, 인

40) 제32조(일반원칙)

“본 장(실종자 및 사망자)의 시행에 있어 체약당사국, 충돌당사국과 제협약과 본 의정서에 언급된 국제적 인도주의기구들의 활동은 주로 친척들의 운명을 알고자 하는 가족의 권리에 의해 촉진되어야 한다.”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and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Protocol 1), June 8, 1977.

권기구의 수많은 결의와 선언에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각종 인권을 알 인권법상의 개념으로서 진실에 대한 권리는 가족의 운명에 대한 진실을 알고자 하는데 권한을 부여하는 몇 가지 법적인 권리들을 의미한다. 진실에 대한 권리가 실종자의 가족에 의하여 미주인권법원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권리의 기초가 되는 원칙들은 유럽인권법원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인권법정에 의해서도 인정되었다. 진실에 대한 권리는 국제협약에서 두 가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⁴¹⁾

i) 국가의 구금상태 아래에 있었던 사람의 운명을 국가가 밝히지 못한 사정은 가족구성원과 관련하여 비인도적 처우를 구성하고, 그러한 처우에 대한 적용가능한 법적보호의 지속적인 침해이다.

ii) 국가의 구금상태에 있는 개인에 대하여 자행된 범죄를 적절하게 조사하거나 처벌하지 아니한 국가의 정황은 재판(justice)에 대한 가족의 권리의 침해를 구성한다.

첫 번째 권리 근거는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미주인권법원(IACtHR)은 Blake v. Guatemala 사건에서 언론인인 Nicholas Blake의 가족은 과테말라 정부로 하여금 블레이크의 실종사건을 조사하도록 강제할 독자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려하였다. 두 명의 미국인, 블레이크와 그의 사진기자 동료인 Griffith Davis가 1985년 업무수행중에 실종되었다. 블레이크의 가족은 수년 후에 과테말라 정부의 도움없이 미국 대사관의 도움으로 실종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미주인권법정은 과테말라 정부가 블레이크의 실종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실을 확인하려는 가족들의 활동을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1985년 3월에 블레이크가 살해당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법원은 블레이크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선언하였다. 법원은 블레이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해명하지 못하는 상황이 미주인권협약상의 가족의 권리에 대한 현재적이고 지속적인 침해인지 여부를 고려하였다. 법원은 가족의 지속적인 고통이 블레이크의 강제실종과 정부의 조사불이행의 직

41) 이하의 내용은 Groome, Dermot, The Right to Truth in the Fight against Impunity, Berkele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9, 175ff.

접적인 결과라고 인정하였다. 법원은 강제실종과 조사 불이행은 미주인권협약의 제1조 제1항(권리존중의무)과 관련하여 가족의 제5조상의 권리(인도적 처우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Case of Street Children(Villagran-Morales et al.) v. Guatemala 사건⁴²⁾에서 미주인권법원은 나중에 고문 살해당한 것으로 밝혀진 몇몇 아동의 강제실종은 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야기하였고, 결과적으로 미주인권협약 제1조 제1항과 관련하여 제5조 제2항의 아동들의 어머니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유럽인권법원은 Cyprus v. Turkey 사건⁴³⁾에서 유사한 입장을 취했다. 1974년 여름 사이프러스 북부에서 군사작전 중 터키 군부대의 구금시설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사람들의 행방에 대해 터키 정부가 지속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법원은 나머지 가족들이 의문의 여지없이 매우 고통스러운 불안과 초조감을 겪었다고 확인하였다. 나아가 그들의 정신적 고통도 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터키 정부가 실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것은 실종자들의 가족과 관련하여 유럽인권협약 제3조(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의 금지)의 지속적인 침해라고 판단하였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인권재판소도 유사한 입장을 취했다. 실종자가 마지막으로 군부대에서 목격되었는데 그의 실종을 정부가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유럽인권협약 제3조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라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 권리의 기초는 권리의 사법적 결정을 통해서 효과적인 재판받을 권리를 제공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에 입각해 있다. 미주인권법원은 블레이크의 친척들이 미주인권협약 제8조 제1항상의 권리(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확인하였다. 법원은 제8조 제1항의 권리는 피해자들의 가족의 권리도 포함한다고 보았다.

42) Case of the "Street Children" (Villagran-Morales et al.) v. Guatemala,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IACrHR), 19 November 1999, available at: <http://www.unhcr.org/refworld/docid/4b17bc442.html> [accessed 9 October 2012]

43) Cyprus v. Turkey, 25781/94, Council of Europ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10 May 2001, available at: <http://www.unhcr.org/refworld/docid/43de0e7a4.html> [accessed 9 October 2012]

미주인권위원회는 몇몇 사례에서 미주인권협약에는 진실에 대한 독자적인 권리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미주인권법원은 미주인권위원회가 1999년에 실종된 세 사람의 행방에 대하여 베네수엘라 정부가 해명하지 못하는 것은 진실에 대한 독자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Blanco-Romero et al. v. Venezuela 사건에서 이 입장을 고려하였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세 가족의 진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진실에 대한 권리가 미주인권협약 제8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제25조(사법적 보호에 관한 권리), 제1조제1항(권리를 존중할 의무)에 들어 있는 독자적인 권리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법원은 진실을 알 권리는 인권침해를 구성하는 사태의 진실을 국가로 하여금 알아내고, 적절한 조사와 처벌을 통해서 관련된 책임을 확립하도록 강제하는 피해자와 피해자 친척들의 권리(재판받을 권리)에 포함된다고 보았다.⁴⁴⁾

미주인권법원은 Castillo-Páez v. Peru 사건에 유사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2001년 Barrios v. Peru 사건에서 페루 정부는 페루 군정보기구 요원에 의한 15인의 살해사건과 관련하여 국제법상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페루 정부는 주장된 사실의 진실을 확인하고 국제법 위반을 인정하면서 피해자 가족의 진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페루 정부의 인정에도 불구하고 진실에 대한 권리는 인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을 얻는 데에 대한 피해자와 그 친척들의 권리와 미주인권협약 제8조와 25조상의 조사와 소추를 통하여 관할 국가기관의 상응하는 책임 속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진실에 대한 권리를 재판받을 권리의 보다 큰 맥락⁴⁵⁾에서 파악하면, 법원은 국가로 하여금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을 적절한 조사뿐만 아니라 조사의 결과에 따라 적절한 소추와 징계조치까지 요구할 수 있게 된다.

44) Blanco-Romero v. Venezuela, Inter-Am. Ct. H.R. (ser. C) No. 138, 1 62 (Nov.28, 2005), http://www.worldcourts.com/iacthr/eng/decisions/2005.11.28_Blanco_Romero_v._Venezuela.pdf

45)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조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 집단희생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에 비추어보면 ---시효소멸론을 주장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시효가 소멸했는지 아닌지는 조사해봐야 알 것이 아닌가? 가해자 아직 누군지 잘 모르는데 시효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는가?

Bámaca-Velásquez v. Guatemala 사건⁴⁶⁾에서 미주인권위원회는 진실에 대한 권리를 가족구성원 뿐만 아니라 전체로서 사회도 보유한 권리라고 묘사하였다. 위원회는 진실에 대한 권리의 집단적 본성을 민주체제의 발전에 필수적인 정보에 대한 사회의 접근권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미주인권법원은 진실에 대한 권리의 집단적 측면의 실현가능성을 암묵적으로 기각하였다. 그러나 2009년 11월에 미주인권법원은 Los Dos Erres 사건에서 권리의 집단적 차원으로 돌아갔다. 법원은 민주적인 사회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은 반드시 알려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 이점은 국가가 인권침해사건을 조사할 의무를 통하여, 다른 한편 형사절차 결과의 공개를 통하여 국가가 반드시 충족시켜야 할 공정한 기대이다. 이것은 그러한 인권침해행동에 어떤 식으로 관여한 사람들의 전원의 유형과 협력 행동의 유형을 국가에게 절차적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⁴⁷⁾

3. 재판받을 권리

피해자 권리장전 제12조는 재판에 대한 권리(right to justice)를 규정하고 있다. 중대한 인권 피해자는 국제법상의 사법구제뿐만 아니라 국내법상의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접근권을 향유하며, 국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a) 공적, 사적인 장치를 통해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또는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에 대한 이용가능한 모든 구제조치들에 관한 정보를 전파하는 것
- (b) 피해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법적, 행정적, 여타 절차의 개시전, 진행중, 종료후에도 피해자와 그 대표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들의 사생활에 대한 불법적인 간섭으로부터 적절히 보호하고, 그들의 안전을 복수와 위협으로부터 확보하고, 피해자의 가족과 증인들의 안전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
- (c) 재판에 대한 접근을 추구하는 피해자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
- (d) 피해자가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또는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에 대한

46) Inter-Am. Ct.H.R.,(ser.C) No. 70(Nov. 25, 2000)

http://www.corteidh.or.cr/docs/casos/articulos/seriec_70_ing.pdf

47) Las Los Erres Massacre v. Guatemala, Inter-Am. Ct. H.R.(ser. C) No. 211, http://www.corteidh.or.cr/docs/casos/articulos/seriec_211_ing.pdf(Nov. 24.2009)

구제조치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법적, 외교적, 영사적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 외교적 보호권을 피해자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음

재판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 이외에도 국가는 피해자 집단이 배상청구를 제기하고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를 개발하기 위하여 적절히 노력해야 한다(제13조).⁴⁸⁾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또는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구제는 피해자가 당사자적격을 갖는 모든 이용가능한 적절한 국제적 절차를 포함하며, 어떠한 국내법상의 구제조치를 해하지 아니한다(제14조).

4. 배상에 대한 권리

1) 배상에 대한 권리

① 적절하고 효과적인 배상(제15조)

적절하고,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배상은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또는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을 시정함으로써 정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배상은 위반행위와 피해의 중대성에 비례해야 한다. 국내법과 국제법상의 의무에 일치하여, 국가는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또는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에 해당하고, 국가에 그 책임이 귀속될 수 있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피해자에게 배상을 제공해야 한다. 개인 또는 법인, 기타 단체가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피해자에게 배상을 제공해야 하고, 또는 국가가 이미 피해자에게 배상을 제공한 때에는 당사자는 국가에게 변상해야 한다.

② 다양한 배상수단(제18조)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개별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에게는 각 사례의 위반의 중대성

48) 그런데 울산보도연맹 사건 판결 이후 어떤 법원은 국제원칙을 망각하고 권리구제의 문을 하루빨리 닫기 위하여 신의칙에 입각해서 제소기간을 6개월로 잡은 희한한 판결까지 내리고 있다.

과 상황에 비례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restoration), 금전배상(compensation), 재활(rehabilitation), 만족(satisfaction), 재발방지의 보증(guarantee of non-repetition)을 정한 원칙 제19조 내지 제2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완전하고 효과적인 배상이 제공되어야 한다.

③ 원상회복(제19조)

원상회복은 가능하다면 피해자를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 또는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가 발생하기 이전 상황으로 회복시켜 놓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원상회복은 자유의 회복, 인권, 정체성, 가정생활, 시민권의 향유, 원래 거주지로 귀환, 고용회복, 재산의 반환을 포함한다.

④ 손해의 유형(제20조)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로부터 야기되는 경제적으로 환산가능한 다음과 같은 손해들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각 사건의 상황을 감안하여 적합하고 비례적인 범위 안에서 금전적인 피해배상이 제공되어야 한다.

(a)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b) 고용, 교육 및 사회적 편익 등 기회의 상실

(c) 물질적인 손해와 잠재적 소득의 상실을 포함하여 소득의 상실

(d) 정신적 고통

(e) 법적 원조 또는 전문가 원조, 약과 의료 서비스, 심리적 사회적 서비스에 소요된 비용

⑤ 재활조치(제21조)

재활조치는 의료적 심리학적 보살핌뿐만 아니라 법률적 사회적 서비스를 포함해야 한다.

2) 만족과 재발방지

실제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와 처벌이 관철되지 못하는 완만한 이행의 상황에는 대체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배상에 관한 권리 중에서 매우 간접적이고 공공적인 성격의 권리구제수단이 만족과 재발방지이다. 현재 한국의 과거청산 현황을 비추어보면 오히려 이러한 공공적 차

원에서 배상조치의 이행 수준은 낮다. 미래의 재발방지라는 측면에서 과거사정리 작업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인권피해자 권리장전의 제22조와 제23조는 매우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한다.

① 만족(제22조)

만족은 필요한 경우 이하의 전부 또는 각부분을 포함한다.

(a) 지속적인 침해의 종단을 겨냥한 효과적인 조치

(b) 진실의 공개가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거나 피해자, 피해자의 친척, 증인 그리고 피해자를 돕기 위하여 또는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입한 사람들의 안전과 이익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실의 검증과 진실의 완전한 공개

(c) 실종자의 소재, 납치된 아동들의 신원, 피살자의 시신의 수색, 시신의 발견, 신원확인,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희망, 가족들의 문화적 관례에 따른 시신의 매장에서 지원

(d) 피해자 및 그와 밀접하게 연결된 사람들의 존엄, 명예, 권리를 회복시키는 공식적인 선언 또는 사법적 결정

(e) 사실의 인정과 책임의 수용을 포함한 공식적 사과

(f) 위반행위에 책임 있는 개인들에 대한 사법적 행정적 제재

(g) 피해자에 대한 기념과 헌사

(h)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 연수와 모든 수준의 교육자료 안에 자행된 위반행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의 포함

② 재발방지(제23조)

재발방지의 보증은 필요한 경우 방지에 기여할 다음의 조치들의 전부를 포함해야 한다.

(a) 군대 또는 보안부대에 대한 효과적인 민간 통제를 확보하는 것

(b) 모든 민간 또는 군사 절차가 적법절차, 공정성, 불편부당성에 관한 국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

(c) 사법부의 독립을 강화하는 것

(d) 법조, 의료, 보건 직역, 미디어 및 여타 관련 직종의 종사자들 그리고 인권 옹호자들을 보호하는 것

(e) 우선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회의 전부분에 인권 교육과 국제인도법 교육, 그리고 법집행공무원, 군인, 보안부대 요원에게 이러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

(f) 법집행공무원, 교정, 여론매체, 의료, 심리, 사회적 업무를 포함한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제 기업들의 행동강령과 윤리규범, 특히 국제적 기준의 준수를 촉진하는 것

(g) 사회갈등의 예방과 감시, 그 해결을 위한 장치를 촉진하는 것

(h)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과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을 허용하거나 조장하는 법률을 재검토하고 개혁하는 것

III. 소멸시효와 국제법⁴⁹⁾

국제법의 영역에서는 국제법상의 범죄(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⁵⁰⁾에 대한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확립된 원칙이다.⁵¹⁾ 그러한 범죄의 피해자들이 배상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도 이미 확립되었다.⁵²⁾ 국가에게는 국제법상 불법행위로 인해 야기된 손해를 완전하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⁵³⁾ 국가책임법 초안도 국제법상 불법행위에 의해 야기된 손해에 책임 있는 국가에게 완전한 배상 의무를 인정하고(제31조), 해당국가는 국내법 규정을 이유로 삼아 배상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2조).⁵⁴⁾ 그런데 이러한 배상청구권은 과연 시효로 소멸하는가? 제노사이드,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등 국제법상 범죄에 대해

49) 이 발제문의 제3절은 민변과 민주법연이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행사(2013.3.21)에서 필자가 발제한 <집단살해에서 소멸시효와 신의칙>에서 발췌한 것이다.

50) 국제법상의 범죄는 세계인권선언에도 등장한 일반적인 개념이다. 국제인도법(전쟁법)과 국제인권법의 심각한 위반행위를 국제법상의 범죄라고 할 수 있겠다.

51) 공소시효에 대한 논의는 이재승, 국가범죄, 엘피, 2010(2011), 80쪽 이하(국제법) 및 497쪽 이하(독일판).

52) 대표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75조, 고문방지협약 제14조 참조.

53) Bassiouni, Cherif,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Victim's Rights, Human rights Law Review, Vol. 6(2006), 203쪽 이하.

54)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in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Work of its Fifty-third Session, UN GAOR 56th Sess., Supp. No. 10, at 43, U.N. Doc. A/56/10 (2001).

서는 공소시효가 배제되므로 마땅히 배상청구권도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지배적이다. 국가책임법은 인권범죄를 비롯하여 국제법상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주장하는데 시효를 알지 못한다. 유엔인권기구들은 이러한 국제법 해석을 따르지만, 국가들은 국내법적 관행에서 이를 따르지 않는다. 한마디로 국제법의 차원에서는 소멸시효는 존재하지 않지만 국가들은 국내법상 시효규정을 들어 국제법상의 책임을 부정하려고 한다.

1. 국제조약법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론은 국제인권법에서는 '효과적인 구제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an effective remedy)'에서 비롯한다. 효과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는 한 소멸시효가 정지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권리는 세계인권선언⁵⁵⁾, 자유권규약⁵⁶⁾, 유럽인권협약⁵⁷⁾에 규정되어 있다. 2005년 유엔총회가 채택한 피해자 권리장전⁵⁸⁾은 피해자 구제에 관한 유권해석이다. 이에 의하면 시효규정은 국제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국제인권법의 총체적 위반과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지만(제6조), "국제법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다른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국내법상 시효규정은 민사소송 및 여타 절차에서도 부당하게

55) 세계인권선언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담당 국가법원에 의하여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the right to an effective remedy)를 가진다.

56) 자유권규약 제2조 3항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a)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해, 그러한 침해가 공무집행 중인 자에 의하여 자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효과적인 구제(an effective remedy)를 받도록 확보할 것.

57) 유럽인권협약 제13조 이 협약에 열거된 권리와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은 그 침해가 공무수행 중인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도 국가당국 앞에 효과적인 구제(an effective remedy)를 받아야 한다.

58)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A/RES/60/147) 이에 대한 Theo van Boven의 개설은

http://untreaty.un.org/cod/avl/ha/ga_60-147/ga_60-147.html. 이에 대한 핸드북은 Utreras, Patricio, IMPLEMENTING VICTIMS' RIGHTS: A Handbook on the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Redress, London, 2006/3. 권리장전의 번역은 이재승, 국가범죄, 엘피, 2010, 674-681쪽.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제7조).”국제법상의 범죄(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에 관련해서라면 공소시효, 형의 시효, 소멸시효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 불처벌투쟁원칙(the Updated Set of Principles on Combating Impunity)도 같은 취지이다.⁵⁹⁾

조약기구들은 제2차세계대전중에 자행된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를 부정하기 위하여 시효규정에 의지하는 것도 비난하였다.⁶⁰⁾ 일본 정부는 성노예에 관하여 공식적인 사죄와 책임도 부정하였다.⁶¹⁾ 일본이 아시아여성기금을 설치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여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일본정부에게 법적 배상 의무가 없다는 전제 아래서 조성된 위로금을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수용할 리가 없었다.⁶²⁾ 자유권위원회(The Human Rights Committee)는 일본정부에게 “권리의 문제로서 생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입법적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⁶³⁾ 고문방지위원회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청구소송을 시효를 이유로 기각한 것을 비판하였

59) Orentlicher, Diane, Updated Set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hrough action to combat impunity E/CN.4/2005/102/Add.1

제23원칙

형사사건에서 시효--공소 또는 형-는 효과적인 구제가 이용될 수 없는 기간에는 진행하지 않는다.

성질상 시효가 존재하지 않는 국제법상의 범죄(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에 대해서는 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피해 배상을 추구하는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대한 소멸시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When it does apply, prescription shall not be effective against civil or administrative actions brought by victims seeking reparation for their injuries).

60) 홍성필, “일본에서의 전후배상소송에 대한 국제인권적 고찰”, 동북아역사재단(편), 한일간의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 2009, 557-602쪽.

61) Shelton, The World of Atonement Reparations for Historical Injustices, *Miskolc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2004), 268.

62) 그 사이 2011년에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에게 인도적 책임(법적 책임?)을 다하라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 개념에 대해서는 조시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인도주의 문제인가?—한·일 정부의 최근 입장에 대하여—”, <민주법학> 제49호, 2012.7, 165-195.

63) Human Rights Committee,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0 of the Covenant,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Japan, 94th Sess., Oct. 13-31, 2008, para. 22, U.N. Doc. CCPR/C/JPN/CO/5 (Dec. 18, 2008).

다.⁶⁴⁾ 구유고전범재판소도 고문방지규범의 국제적인 승인을 이유로 고문은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였다.⁶⁵⁾ 국제형사재판소의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시효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범죄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제29조 및 제75조). 캄보디아특별재판부도 30년을 지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지만 희생자들에게 정신적 집단적 배상을 시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⁶⁶⁾ 이러한 기초에서 보자면 일반적인 국제법은 배상청구권에 대한 시효규정을 두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추론할 수 있다. 국제인권조약법은 국제범죄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반면에, 소멸시효의 배제가 국제관습법인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제한적이다. 즉 국제절차에서 시효규정의 부존재로부터 시효의 부과가 국제법 아래서 일반적으로 금지된다는 법적 확신이 국가공동체에서 존재한다고 확정할 수 없다. 심지어 어떠한 국가도 배상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미주인권법원과 유럽인권법원에 제소기간을 국내적 절차를 마친 날로부터 6월 이내로 제한한다는 규정을 다루지 않았다.⁶⁷⁾ 반면 아프리카인권법원은 6개월의 시간적 한계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⁶⁸⁾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불관용을 반대하는 세계회의 선언(Declaration of the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도 노예제와 여타 인권범죄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시효배제를 언급하지 않았다.⁶⁹⁾ 더구나 제노사이드,

64) Committee Against Torture,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against Torture : Japan, 3 August 2007, para.12 CAT/C/JPN/CO/1. <http://www.unhcr.org/refworld/docid/46cee6ac2.html> (“당사국은 자국의 시효규정을 재검토하고 고문방지협약상의 의무와 완전히 부합하게 하여 고문시도를 포함하여 고문,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와 고문 관여자들의 행위를 시효에 관계없이 조사하고, 기소하고,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

65) Furundzija Case, Judgement of 10 December 1998, IT-95-17/1, para. 157.

66) 이 문제에 대한 공식홈페이지상의 설명 <http://www.eccc.gov.kh/en/faq/will-victims-be-entitled-compensation>

67) 미주인권협약 제46조 1(b)청원이나 통보는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최종판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유럽인권협약 제35조 (1) 법원은....최종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6월 이내에...(제출된) 사건만을 처리할 수 있다.

68) 아프리카 인권헌장 제56조 (6)국내적 구제를 거친 후 또는 인권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된 후 합리적인 시간(within a reasonable period) 안에 제출되었는지...

69) Durban Declaration(8 sept. 2001). A/CONF.189/12 실효적 권리구제를 광범위하게 옹호하지 시효배제를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지는 않다. para. 98-106 참조.